

630.951

L293L

1999 v. 6

1999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1998. 11. 12

[입업및산촌구조개선]

총6권중 제6권



농림부

일 리 두 기

1. 이 지침서는 모두 6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사업명 뒤에 *표시한 것) 및 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제1권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해설을 수록하였고, 제2권부터 제6권까지는 분야별 사업시행지침(1999년도 사업시행 요령과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안내)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3.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국립농산물검사소 출장소, 농촌지도소, 농·축·임·삼협조합, 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 지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시행지침의 1999년도 사업비는 잠정금액이므로 정부예산의 국회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 각 권별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권 : 관계규정 해설
 - 제2권 :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3권 : 농업(원예특용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4권 : 축산업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5권 : 농촌개발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6권 :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6. 이 지침서의 내용은 PC통신(AFFIS)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지침서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AFFIS문의 : 농림수산정보센터 시스템운영과(전화 589-2039)
 - 구입문의 : 농림수산정보센터 총무과(전화 589-2034, 2036, 2048)

차 례

제1권 [관계규정 해설]

I. 농림사업실시규정 해설	1
1. 배경	3
2. 주요골자	4
3. 주요 변경사항	7
4. 해설	9
제1장 총칙	9
제2장 자율사업	13
제3장 공공사업	19
제4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21
제5장 보칙	23
II.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해설	25
1. 배경	27
2. 주요골자	28
3. 주요 변경사항	32
4. 해설	36
III.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 훈령 제965호)	55
IV.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림부 훈령 제948호)	107
V. 참고사항	137
1. 42조원 지원계획	139
2. 농어촌특별세사업 지원계획	141
3. 농림사업자금 대출안내	143

제2권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I. 생산기반확충	149
1. 영농규모화사업(자율)	151
2. 토양개량사업(자율)	180
① 토양개량제공급 ② 객토	
3. 주요농작물원원종 및 원종생산*(공공)	202
4. 밭기반정비(공공)	212
5. 경지정리사업(공공)	232
6. 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공)	260
7. 배수개선(공공)	272
8. 수리시설개보수(공공)	295
9. 대·중규모용수개발(공공)	331
10. 지표수보강개발(공공)	357
11. 농촌생산기반조사 및 생산기반종합정비시범사업(공공)	375
① 지하수개발조사 ② 농업용수수질조사·연구 ③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	
④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시범사업	
12. 대단위농업종합개발(공공)	412
13. 지역특화사업지원(공공)	427
①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② 감귤복합가공처리시설사업	
14. 서남해안간척(공공)	462
II. 농업기계화	481
15. 농기계구입지원(자율)	483
① 일반농가 ② 벼직파 및 밭작물용 ③ 생산자조직 ④ 쌀전업농	
16. 농기계사후관리지원(자율)	575
① 농기계보관창고설치 ② 농기계수리봉사지원 ③ 광역농기계수리센터설치	
17. 시설농업기자재생산 및 농업기계생산비축지원(공공)	612
①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② 농업기계생산비축지원	
III. 생산 및 유통개선	627
18. 미곡종합처리장설치운영(자율)	629
19. 농업협동조합합병지원(공공)	651
20. 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실시(공공)	654
① 규모화촉진직접지불 ②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제3권 [농업(원예특용작물)구조개선]

I. 생산기반확충	693
21. 고품질수량증자개발(공공)	695
II. 생산 및 유통개선	705
22. 원예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자율)	707
① 시설원예 ② 노지채소 ③ 특작 ④ 과실	
23. 농산물규격출하(자율)	800
① 포장자재비지원 ② 포장개선시범	
24. 생산자조직육성(자율)	822
25. 산지유통기반확충	833
①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설 및 집하장시설보완 ② 농산물저온유통기반확충	
26. 농수산물도매시장및공판장건설(공공)	891
① 농수산물 도매시장건설 및 공판장건설 ② 농산물 도매유통시설 보완	
27. 농산물물류표준화(공공)	922
28. 농축산물판매촉진(공공)	933
29. 농산물물류센터(시설)건설(공공)	938
① 물류센터 ② 소비자단체물류시설	
30. 농산물직거래지원(공공)	959
31.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물류센터출하촉진자금(공공)	976
32. 채소수급안정사업(공공)	983
33. 농산물해외시장개척(공공)	990
34. 농수산물무역진흥센터건립(공공)	1013
35. 수출농산물저장시설설치(공공)	1019
36. 우수농산물수매 및 유통지원사업(공공)	1026

제4권 [축산업구조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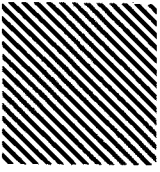
I. 사육기반확충	1043
37. 축산경쟁력강화사업(자율)	1045
①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② 축산분뇨처리시설 ③ 경주마육성사업	
38. 축산단지조성사업(공공)	1107
39. 가축계열화사업(공공)	1120
40. 소산업정보화사업(공공)	1135
41.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공공)	1141
II. 생산 및 유통개선	1151
42.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공판장건설(공공)	1153
43. 축산물품질향상 및 유통시설지원(공공)	1159
① 품질향상 및 유통시설 ② 등급판정	
44. 경영상담·홍보 및 기술개발(공공)	1186
① 경영상담 및 홍보 ② 가축공제 ③ 식육처리전문인력양성	
45. 축협조합 경영개선(공공)	1199
46. 축산기자재생산시설지원사업(공공)	1211
47. 사료제조시설 및 사료원료구입(공공)	1216
48.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공공)	1234
①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 ② 축산위생시설자금지원	
49. 학교우유급식사업(공공)	1258
50. 축산자조금(공공)	1266
III. 가축개량	1271
51. 가축개량사업(공공)	1273
① 한우개량 ② 젖소개량 ③ 돼지개량 ④ 닭개량	
52. 가축개량기반구축(공공)	1311

제5권 [농촌개발]

I. 생산 및 유통개선	1319
53.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 및 환경농업지구조성(자율)	1321
①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 ② 환경농업지구조성 ③ 친환경농업시범마을조성 ④ 환경농업교육사업	
54. 농촌가공산업육성(공공)	1371
① 농산물가공산업육성 ② 특산단지육성 ③ 농산물가공공장 경영·기술지도 ④ 명품개발	
II. 기술개발 및 정보화	1457
55. 농림기술개발(공공)	1459
56. 농촌활력화시범사업*(공공)	1468
① 농업인건강관리시설 ② 지역특화시범사업	
57. 기술보급사업*(공공)	1488
① 새기술보급시범사업 ② 품목별전문교육 및 농업인학습단체육성 ③ 영농4-H회원 시범영농지원	
III. 인력육성	1515
58. 농업인후계자육성(자율)	1517
59. 전업농육성(자율)	1552
60.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시범사업(자율)	1597
61.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공공)	1615
62. 농업계학교등교육지원(공공)	1627
① 농업계특성화대학지원 ② 한국농업전문학교지원	
63. 농업경영컨설팅지원(공공)	1638
IV. 소득원개발	1677
64.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자율)	1679
65. 농공단지육성(공공)	1739
66. 한계농지정비(공공)	1756
67. 농·축산경영자금지원(공공)	1770
① 농업경영자금 ② 축산경영자금	
V. 생활환경개선	1785
68. 농촌정주생활권개발(공공)	1787
① 일반정주권개발 ② 문화마을조성 ③ 농촌마을하수도시설 ④ 농가주거환경개선	
69.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공공)	1867

제6권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I. 경영기반확충	1891
70. 산림경영장비지원(자율)	1893
71. 사유림협업경영(공공)	1897
72. 임도시설(공공)	1902
73. 영림계획(자율)	1907
74. 임업기술개발보급(공공)	1912
II. 생산 및 유통개선	1917
75. 임산소득증대(자율)	1919
① 단기소득임산물생산 ② 조경수·분재소재생산 ③ 산림복합경영	
76. 임산물이용가공 및 저장시설(자율)	1944
77. 임업협동조합 및 임산물생산자조직육성(공공)	1956
① 임업협동조합육성 ② 임산물생산자조직육성	
78. 임산물유통개선지원(공공)	1967
79. 합판 및 보드류시설지원(공공)	1997
III. 인력육성	2003
80.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육성(자율)	2005
81. 임업전문인력양성 및 임도시공장비지원(공공)	2011
① 임업전문인력양성 ② 임도시공장비지원	
IV. 환경임업육성	2023
82. 산림휴양공간조성(공공)	2025
83. 사방사업(공공)	2031
84. 산림생태보전(공공)	2036
85. 산촌종합개발(공공)	2043
V. 산림자원조성	2055
86. 해외조림사업(자율)	2057
87. 산림조성(공공)	2063



I. 경 영 기 반 확 충

여 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경영과(과장 김현식, 임업사무관 김용관)입니다.

1. 목 적

독립가, 임업후계자 및 산주들에게 임업용 기계·장비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산림경영의욕을 높이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산주들의 소득증대

2. 시책 및 추진방향

- 용자지원으로 산주 자율경영 유도
- 민간부문의 임업기계화 촉진
- 인력 절감을 통한 임업생산효율 제고

3. 근거법령

임업진흥촉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재정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92-'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2004	
사업량	97명 (188대)	28명 (41대)	16명 (16대)	10명 (10대)	140명 (140대)	569명 (569대)	
사 업 비	계	6,325	1,517	879	737	10,045	40,182
	보조	-	-	-	-	-	-
	용자	4,426	1,062	615	516	7,032	28,129
	지방비	-	-	-	-	-	-
	자부담	1,899	455	264	221	3,013	12,053

5. '9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 사업시행주체 : 시·군·구
- 지원대상 : 소재산주 및 산림경영자
- 지원규모 및 조건
 - 재 원 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비율 : 용자 70%, 자부담 30%
 - 지원내용 : 산림경영장비(하산장비, 상차기, 소운반장비)
 - 용자조건
 - 금 리 : 연 3%
 - 용자기간 : 10년(3년거치 7년상환)
 - 한 도 액 : 50백만원 이내

나. '99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계	10명	737	516	-	516	-	221
임업 기계화	10명	737	516	-	516	-	221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 대상자 선정 : 시·군·구

○ 용 자 지 원 : 시·군임업협동조합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경영국 산림경영과(042-481-4209)

○ 시·도 : 농정국 산림과(녹지과)

○ 시·군 : 녹지과 또는 산림과

○ 임협중앙회 : 금융부(02-416-9421)

○ 시·군임협 : 사업과

다. 자금지원 예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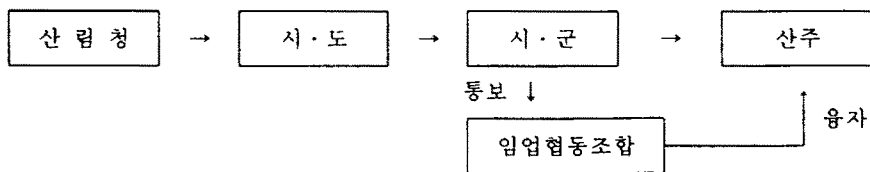
○ '99산림경영장비 지원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된 자.

라. 사업시행

○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법

- 사업수행주체 : 시·군·구

- 사업집행절차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책임자 : 시장·군수, 관할 임업협동조합장

○ 사후관리절차

- 시장·군수 관할 책임하에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추진 장비구입활용 및 자금의 적정사용여부 점검

- 용자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상환여부 점검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구(녹지과, 산림과)

나. 신청자격(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일정규모의 산림을 소유하고 산림경영의 의욕을 가진자

(2) 우선순위

- ① 독립가
- ② 임업후계자
- ③ 산림경영자
- ④ 일반소재산주

다. 신청절차

- 선정권자 : 시장·군수
- 선정절차 : 산주신청→심사(시장, 군수)→선정결과를 지원대상자 및 관할 임업협동조합장에게 통보
- 선정권자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 수행능력, 자부담능력, 영림계획, 융자금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라.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 1부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 대출신청자료 1부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4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마. 기타사항 (유의사항)

- 산림경영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 및 융자
- 농어촌지역, 종합개발사업과 산림사업 융자지원의 연계추진
- 채권보전 : 융자취급기관 여신관계 규정에 의함.

71 사유림협업경영(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기술지원과(과장 김형광, 임업사무관 조동하)입니다.

1. 목 적

- 영세사유림을 대상으로 협업체를 조직·육성함으로써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산주 소득증대와 사유림경영의 활성화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협업체의 양적인 확대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지원 확대
- 협업체 경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회원 상호간의 결속력 강화 및 소득증대 도모
- 협업경영성과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경영목표 관리체계 확립

3. 근거법령

임업진흥촉진법 제7조(경영구조개선) 및 동법시행령 제4조(협업경영)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92-'96년	'97년	'98년	'99년 (예산안)	2000년	2001-2004
사업량	조 직 (운 영)	217개	15개 (232개)	15개 (247개)	15개 (262개)	15개 (262개)	75개 (515개)
	공동소득지원	160개	56개	24개	19개	19개	95
사업비	계(백만원)	7,579	2,401	2,601	2,281	2,281	11,465
	보 조	5,068	1,335	1,501	1,418	1,418	7,150
	음 차	602	320	330	259	259	1,295
	지 방 비	602	320	330	259	259	1,295
	자 부 담	1,307	426	440	345	345	1,725

※ ()내는 협업체 조직누계임

5. '99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 경

사유림 총면적은 4,539천ha, 산주수는 약 2,102천명으로 산주 1인당 평균 소유면적 2.1ha에 불과하고 10ha미만 산주수가 96%차지하고 있어 개별 산주의 산림경영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합리적인 산림경영을 하기 위하여 소규모 산주들의 협업을 통한 산림소득증대 유도

(2) 자금지원대상자, 지원단가, 지원조건

구 분	지원 대상자	지 원 단 가	지 원 조 건
· 경영지도사업	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	인건비: 9,900천원/1인1년 운영비: 4,600천원/기관	국고 80% 국고 100%
· 산림사업	협업체 회원	조립 : 82,000원/ha 육립 : 50,000원/ha	자부담의 30%
· 공동소득원사업	협업체 회원	표고재배 : 14,250천원 부산물가공 : 9,000천원 산채재배 : 7,500천원	국 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나. '99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백만원)	예산액(일반회계, 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2,213	1,418	1,418	-	259	536
-일반회계		1,350	1,159	1,159	-	-	191
· 경영지도사업	85명	1,256	1,065	1,065	-	-	191
· 산림사업	1,540ha	94	94	94	-	-	-
-농특회계		863	259	259	-	259	345
· 공동소득원사업	19협업체	863	259	259	-	259	345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자원조성국 기술지원과(042-481-4190~3)
- 시·도 : 산림과(임업협동조합중앙회)
- 시·군·구 : 산림과(녹지과), (임업협동조합)

다. 자금지원대상자

- 경영지도사업 : 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
- 산림사업 및 공동소득원 사업 : 협업체 회원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계획 작성 : 임업협동조합 및 협업체회원은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농특회계는 시장·군수, 일반회계는 임업협동조합장에게 제출
 - 사업계획 및 변경승인권자 : 시장·군수, 임업협동조합장
 - ※사업명 변경시는 산림청장 승인
- 사업비집행방법
 - 공동소득원 사업을 시·군에서 집행
 - 경영지도사업 및 산림사업은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집행
- 추진일정
 - 보조금신청 : 1월 ~ 12월
 - 보조금 교부결정 : 1월 ~ 12월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지원대상자의 보조금의 사용실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부당사용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보조금을 회수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비치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한 후 보조금을 정산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협업체의 공동소득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 임업협동조합장은 협업경영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업경영지도원을 지도·감독

나. 보고·기타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99.12.31까지 보조사업 실적을 산림청장에게 보고 (총공통-9)
- 보조사업의 실적확인 및 보조금의 확정·정산을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
- 시·도(시·군)는 지원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에 제출 (총민 49-1)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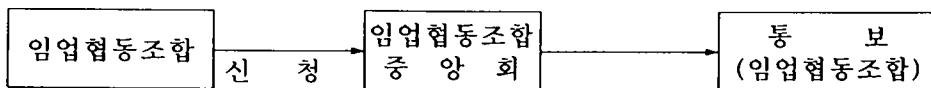
- 일반회계 : 임업협동조합
- 농특회계 : 시·군

나.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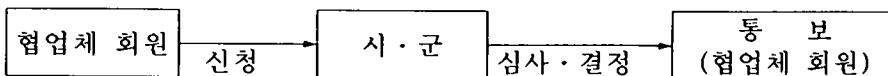
- 협업체 회원
- 협업체가 조직된 임업협동조합

다. 신청절차

○ 일반회계



○ 농특회계



라.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4부(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1항 관련 별지제3호서식)

마.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임업진흥권역의 영림계획 작성지역
- 소재 산주의 비율이 높은 지역
- 협업체 설립 및 지도가 용이한 지역
- 임업협동조합 자립도가 높은 지역

○ 신청절차

- 협업체가 조직된 시장·군수는 협업체공동소득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산림청에 신청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협업경영지도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72	임 도 시 설 (공공)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토목과(과장 허경태, 임업사무관이철수)입니다.

1. 목 적

산림경영의 기반시설인 임도를 설치함으로써 임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산촌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환경친화적 임도의 시설·관리대책” 지침에 따라 물량확대보다는 품질을 우선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임도 시설
- 조림·육림·간벌·목재생산 등 산림사업 대상지에 우선 시설, 임업진흥권역에 집중시설하여 활용도 제고
- 기존도로와 연계하여 지역 완결형으로 시설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10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2(임도의 시설 등)
- 산림법 제10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의2(자금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km, 백만원)

구 분		'92-'96년	'97년	'98년	'99년 (예산안)	2000	2001-2004
사업량(보수)		5,178 (1,400)	1,238 (428)	962 (400)	985 (400)	1,388 (950)	5,340 (3,780)
사 업 비	계	242,881	77,120	62,004	63,502	91,021	350,064
	보 조	107,370	33,422	28,787	28,924	39,604	149,896
	용 자	26,793	9,965	4,430	5,654	11,814	50,276
	지방비	92,578	31,066	23,030	23,139	31,684	119,924
	자부담	16,140	2,667	5,757	5,785	7,919	29,968

※ ()내는 보수물량으로 사업량에 미포함

5. '99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개 요

- 조립·육립·벌채·병해충방제 등에 필요한 임업경영기반을 구축하고
오지교통개선 및 농산촌지역개발을 위하여 산림내 임도(산길)를 개설

○ 지원대상

- 국고보조임도 : 시·군 임도시설계획에 반영된 노선이 통과하는 산림
- 용 자 임 도 : 산주 또는 산림경영자로서 임도를 시설하고자 하는 자

○ 지원규모

- 국고보조임도 : 임도시설계획에 의거 사업량 확정후 설계결과에 따라
소요액 지원
- 용 자 임 도 : 설계금액범위내에서 1인당 2억원이내

○ 지원조건

- 국고보조임도 :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용 자 임 도 : 용자금 100%(금리 : 연 3%, 5년거치 10년상환)

나. '99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단위 : km,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보조:농특, 용자: 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985 (400)	63,502	34,578	28,924	5,654	23,139	5,785
○임도신설	985	61,902	33,778	28,124	5,654	22,499	5,785
- 보조	895	56,248	28,124	28,124	-	22,499	5,625
- 용자	90	5,654	5,654	-	5,654	-	-
○임도보수	400	1,600	800	8,000	-	640	160

<추진체제>

가. 국고보조임도

1)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2)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자원조성국 산림토목과 (042-481-4185-7)
- 시·도 : 농정국 산림과(특·광역시 녹지과, 제주도 산림환경과)
- 시군구 : 산림과(녹지과)

3) 대상지 선정

○ 선정기준

- 조림·육림·간벌·주벌 등 산림사업 대상지
- 산불예방·병해충방제 등 산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임지
- 산림휴양자원의 이용 또는 산촌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임지
- 농산촌 마을의 연결 등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임지

○ 선정방법

- 영림계획에 반영된 노선, 기타 선정기준에 알맞는 노선 선정
- 다목적 활용도가 높은 지역 우선 선정

4) 사업시행

○ 사업공정계획

- 1~2월 : 노선선정 완료
- 3~4월 : 측량·설계 완료
- 5~12월 : 공사 실행 및 준공
- ※ 전년도 설계지역은 해빙직후 착공

○ 사업계획 변경

- 공사실행에 따라 변경요인 발생시 시·군의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하여 실행

○ 사업비 지원방법(실행체계)

- 산림청 : -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사업량을 검토하여 예산청에 예산 신청
 - 국고 소요예산 확보 및 확보된 예산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시달
- 시·도 : - 익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 신청
 - 산림청으로부터 배정받은 사업량에 대한 지방비 확보 및 시·군에 사업지시
- 시·군 : - 익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 신청
 - 시·군비 확보, 사업설계 및 발주, 실행 지도 감독

나. 용자임도

1) 사업주관기관 : 시·군 임업협동조합

2)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자원조성국 산림토목과 (042-481-4185-7)
- 임협중앙회 : 금융부(02-416-9421-2)
- 시·군 : 임업협동조합

3)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산주 또는 산림경영자로서 임도를 자부담(용자)으로 시설하고자 하는 자
- 용자취급기관(임협)의 여신관계 체규정에서 정한 채권보전이 가능한 자

○ 우선순위

- 시·군임업협동조합의 용자신청 순위에 따라 선정

○ 선정절차

- 임업협동조합에 접수된 용자신청서에 의거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후 선정

4) 사업시행

○ 사업공정계획

- 1~3월 : 용자대상자 및 노선선정 완료
- 3~12월 : 설계 및 공사실행·준공

○ 사업계획 변경

- 임도공사 변경요인 발생시 시·군임협과 협의한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설계변경 실행

○ 사업비 지원방법(실행체계)

- 산림청 : 용자지침시달 및 예산확보후 사업계획의 종합 시달
- 임협중앙회 : 사업계획을 도별로 조정
- 시·군임업협동조합 : 용자대상자 선정 및 사업실행
 - ※ 용자임도시설에 따른 산림형질변경 또는 영림계획사업 등에 대한 행정처리는 시·군에서 조치

○ 용자금 집행

- 현지확인후 사업실적에 따라 용자금 지원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사후관리 원칙(용자금의 관리는 임업협동조합)
 - 용자임도는 산주가 사후관리원칙(시장·군수는 협조·지원)
- 임도를 시공함으로써 혜택을 받는 산주도 공동관리

나. 보고·기타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고사항(총공통-9)

73	영 립 계 획 (자 울)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경영과(과장 김현식, 임업사무관 전범권)입니다.

1. 목 적

영림계획에 의한 산림경영을 통하여 조림·육림·벌채·임도시설등 계획적인 산림사업을 실행함으로써 산림경영의 합리성 및 생산성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산주의 자율적 영림계획 작성·운영을 통한 합리적 산림경영 유도
- 영림계획에 의한 철저한 산림사업 실행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8조(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영림계획의 작성등)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6년	'97년	'98년	'99년 (예산안)	2000년	2001-2004	
사업량 (천ha)	1,822	167	153	100	455	1,573	
사	계	8,882	1,174	1,078	810	2,709	8,692
	보 조	3,682	539	539	405	1,173	3,823
업	용 자	-	-	-	-	-	-
비	지방비	2,628	539	539	405	1,487	4,609
	자부담	2,572	96	-	-	49	260

※ 2000년 이후는 2단계 농어촌발전계획상의 지원계획임

5. '99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설명

○ 사업내용

- 산림현황 조사내용에 따라 10년 계획기간으로 영림계획 작성
- 영림계획 작성내용
 - 조 림 : 조림수종, 면적, 수량
 - 육 림 :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비료주기, 천연림보육 등
 - 벌 채(수목굴취) : 벌채수종, 면적, 수량
 - 임 도 : 임도의 노선, 거리, 시설년도 등
 - 기 타 : 소득사업

○ 지원대상

- 영림계획작성 대상년도 산림소유자
- 영림계획 미작성 산림소유자

○ 지원단가

- 영림계획작성 : 8,102원/ha(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조건

- 영림계획 작성을 통하여 계획적인 산림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작성경비 지원
- 기준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50%

나. '99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일반회계)			-		
			계	보조	융자			
계	100천ha	810	405	405	-	405	-	
영림계획작성	100천ha	810	405	405	-	4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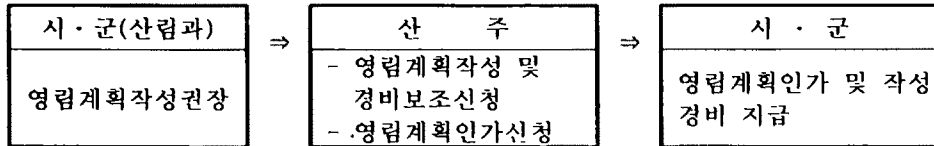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나. 신청자격

- 1999년도 영림계획 작성대상 및 영림계획 미작성 산림소유자

다. 신청절차



라.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마. 대상자 선정

o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계획적으로 산림을 경영하고자 영림계획작성을 희망하는 산주를 선정

o 선정절차

- 영림계획 미작성 및 작성 대상년도 도래 산림소유자 파악(시·군)
- 영림계획 작성권장(시·군)
- 보조금 신청(산주)
- 보조금 교부(시·군)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나. 사업담당부서

- o 중 앙 : 산림청 산림경영국 산림경영과(042-481-4206)
- o 시·도 : 농정국 산림과
- o 시·군자치구 : 산림관련 부서

다. 자금지원 예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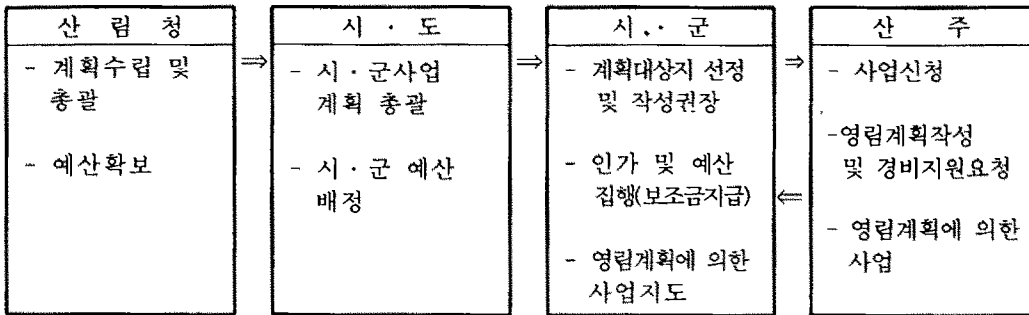
- o '99 영림계획작성 산림소유자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및 실행

- 영림계획 작성대상 산림현황 파악 및 예산확보
- 영림계획 작성대상지 선정 및 작성 권장
- 영림계획 작성권장을 받은 자가 영림계획을 작성하고 자 할 경우는 작성경비 보조요청
- 영림계획을 직접 작성한 자(영림계획작성을 위탁받은자)에 대하여 영림계획 인가후 작성경비 지급

○ 사업비 지원방법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영림계획 인가전에 현지 확인하여 영림계획이 현지여건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 현지확인후 영림계획 작성에 소요된 경비내역서를 제출받아 작성경비 지원
- 영림계획을 작성한 임지에 대하여는 영림계획대로 산림사업이 이루어 수 있도록 지도
- 영림계획대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선 지원
- 영림계획대로 사업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영림계획 인가 취소

나. 보고·기타

○ 년 보

- 영림계획 작성현황 및 실행상황 보고(총49-31)
-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총 공통-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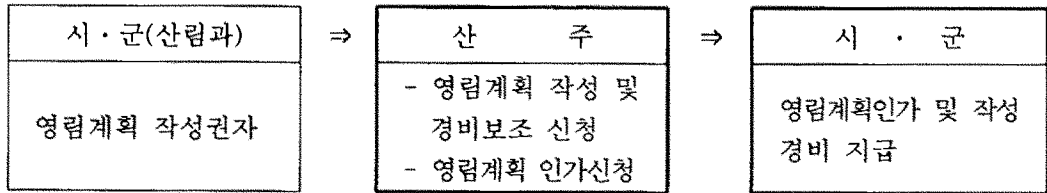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나. 신청자격

- 2000년도 영림계획 작성대상 및 영림계획 미작성 산림소유자

다. 신청절차



라.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마.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계획적으로 산림을 경영하고자 영림계획작성을 희망하는 산주를 선정

○ 선정절차

- 영림계획 미작성 및 작성 대상년도 도래 산림소유자 파악(시·군)
- 영림계획 작성권자(시·군)
- 보조금 신청(산주)
- 보조금 교부(시·군)

74 | 임업기술개발보급 (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기술지원과(과장 김형광, 임업사무관 남송희)입니다.

1. 목 적

- 산림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농산촌 소득 향상
- 생물공학을 응용한 신제품개발 및 기능성 신물질 개발
- 산림자원의 효율적 개발·이용 및 고부가가치 생산기술 개발
- 임업기술 보급을 통한 산주의 산림소득증대 및 임업의 산업화

2. 시책 및 추진방향

- 제4차 산림기본계획과 연계한 정책 및 기술개발
- 임업의 산업화, 실용화 기술개발
- 개발된 임업기술을 사유림 산주에게 보급하여 실용화
- 임업기술지도원을 산림경영 주체별로 지정하여 경영 책임지도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0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농림수산특정연구사업의 실시), 산림법 제114조의3(공동연구개발)
- 산림법제10조(임업기술지도 등) 및 동법시행령제13조(임업기술지도원의직무 및 배치)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92-'96년	'97년	'98년	'99년 (예산안)	2000년	2001-2004
사업량	-일반연구(제목)	765	95	95	94	95	380
	· 임업시험연구	514	60	59	59	60	240
	· 임목육종연구	251	31	31	30	30	120
	-공동연구(제목)	28	4	5	5	5	20
	-지도원급여지원등(명)	(787)	(787)	(787)	(787)	(787)	(787명/년)
사업비	계	95,318	18,650	19,787	20,433	19,806	79,224
	-연구개발비	65,966	11,598	12,818	14,127	13,500	54,000
	· 보 조	65,966	11,598	12,818	14,127	13,500	54,000
	-기술보급비	29,352	7,052	6,969	6,306	6,306	25,224
	· 보 조	23,264	5,628	5,513	4,984	4,984	19,936
· 자 부 담	6,088	1,424	1,448	1,322	1,322	5,288	

5. '99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개 요

○ 일반연구

-임업시험연구

- 산림환경보전과 공익기능 유지·증진 및 임업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 임산자원의 고도이용과 단기임산소득원 개발 및 임업경제구조·제도개선
- 주요향토 경제수종 및 유실수의 신품종 육성
- 우량 신품종 대량증식 기술 및 생물공학을 응용한 신물질 개발

○ 공동연구

- 임산자원의 발굴·이용 기술

- 농산촌의 소득과 연계된 산촌개발사업 연구 등

○ 기술보급

- 임협에 배치된 기술지도원 급여 및 기술지도 장비구입비 지원

- 임업기술 홍보자료 발간비 지원

(2) 지원대상자

○ 일반 및 특정연구 : 산·학·연·관·민으로 구성된 합동연구팀 및 소속연구기관

○ 기술보급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3) 지원단가

○ 임업기술지도원 급여 : 5,800천원/1인/1년

○ 짚 차 : 9,600천원/1대

○ 산림지 : 490원/1부

(4) 지원조건

○ 일반 및 공동연구 : 전액국고

○ 기술보급

- 임업기술지도원 급여지원(787명) : 국고 80%, 자력 20%

- 임업기술지도장비(짚차 : 30대) 및 산림지 발간비(연 276천부)지원 : 국고 70%, 자력 30%

나. '99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백만원)	예산액(일반회계, 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합 계		20,433	19,111	19,111			1,322	
기술 개발	-일반연구	94과제	13,877	13,877	13,877	-	-	-
	· 임업시험	59	7,337	7,337	7,337	-	-	-
	· 임목육종	30	6,540	6,540	6,540	-	-	-
	-공동연구	5	250	250	250	-	-	-
	소 계	94	14,127	14,127	14,127	-	-	-
기술 보급	-지도원 급여	787명	5,793	4,562	4,562	-	-	1,141
	-장비지원(찢차)	30대	410	287	287	-	-	123
	-산림지 발간	276천부	193	135	135	-	-	58
	소 계		6,306	4,984	4,984	-	-	1,322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임업기술개발 : 산림청(임업연구원)
- 임업기술보급 : 산림청(임협중앙회, 임업협동조합)

나.사업담당부서

- 산 림 청 : 자원조성국 기술지원과(042-481-4190~6)
- 임업연구원 : 기획과(02-961-2522~3)
임업연구원 육종부(0331-290-1142~3)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 회원지원부(02-416-9419~20)
- 시·군자치구 : 임업협동조합

다. 자금지원대상자

-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일반연구 : 임업의 산업화, 산지이용의 합리화 등 산림시책과의 연계성
 - 공동연구 : 현장적용성, 산업화 가능성 등

○ 선정절차

- 일반연구 : 임업연구기관 자체심의 선정
- 공동연구 : 공모과제를 대상으로 임업기술개발심의회에서 심의 선정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일반연구 : 자체 선정된 과제설계서를 작성, 임업연구원에서 심의선정
- 공동연구 : 임업기술개발 심의회에서 선정된 과제를 주관 연구기관과 협약체결 후 사업시행
- 임업기술보급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임업기술지도원의 연간 지도 활동계획 수립

○ 사업비 집행방법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 산림청장 : 보조금 교부결정(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 : 보조사업실적보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
- 산림청장 : 보조금의 금액확정(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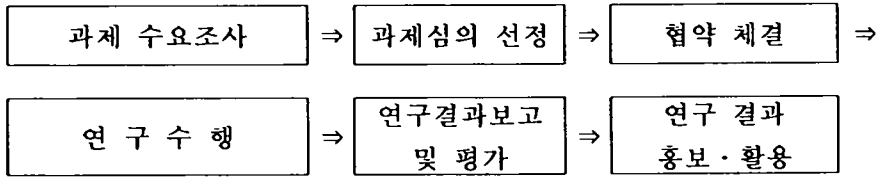
- 연구성과 보고서를 유인하여 학계, 단체, 임협, 임업후계자, 독립가 등에게 배부 및 전산처리
- 임업중앙회 보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 준	비 고
	부터	까지		
접차	취득일	6년		조달청 고시 제6호 물품내용 연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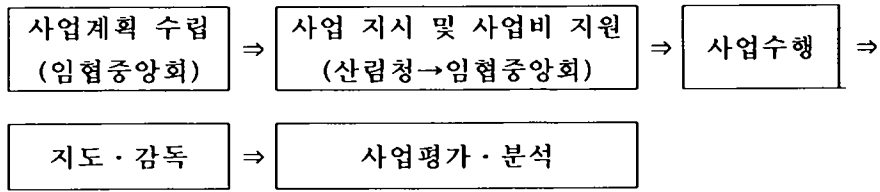
나. 보고·기타

- 임업기술보급 : 보조사업 완료 후 사업실적 보고(총공통-9)

o 공동연구(산림청)



o 기술보급(산림청, 임협중앙회)



Ⅱ. 생산 및 유통 개선



여 백

75 임산소득증대(자율)

I.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임산물유통과(과장 남성현, 행정사무관 최병암)입니다.

1. 목 적

○ 임산소득사업을 확대하여 소득원 개발 촉진 및 생산자 소득증대

2. 시책 및 추진방향

- 표고 등의 재배시설 현대화·규모화 지속 추진으로 생산경쟁력 제고
- 밤 생산·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계화 기반시설 확충
- 송이, 산채류, 대추 등 고소득품목 개발 및 지원 확대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109조(자금지원), 임업진흥촉진법 제9조(임산물소득원의 개발·육성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가. 표고생산기반조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6년	'97년	'98년	'99년 (예산안)	2000년	2001-2004
사 업 량		-	-	-	-		
사 업 비	계	50,540	29,854	36,323	38,063	38,063	152,252
	보 조	4,125	4,173	7,178	5,409	5,409	21,636
	용 자	25,753	11,160	11,033	14,712	14,712	58,848
	지방비	2,752	4,173	5,793	4,526	4,526	18,104
	자부담	17,910	10,348	12,319	13,416	13,416	53,664

※ 사업량은 세부사업별 단위가 상이하므로 '99년도 사업비 내용 참조

나. 기타 고소득임산물 생산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6년	'97년	'98년	'99년 (예산안)	2000년	2001-2004
사 업 량		-	-	-	-		
사 업 비	계	2,245	1,687	3,158	8,774	8,774	35,096
	보 조	-	-	540	1,948	1,948	7,792
	용 자	1,571	1,181	1,491	3,323	3,323	13,292
	지방비	-	-	540	1,298	1,298	5,192
	자부담	674	506	587	2,205	2,205	8,820

※ 사업량은 세부사업별 단위가 상이하므로 '99년도 사업비 내용 참조

5. '99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표고생산자금 지원

- 사업내용 : 표고자목·툽밥배지·종균 등 표고생산 재료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자 : 표고원목·툽밥균상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융자 70%, 자부담 30%
- 지원조건 : 연리 6.5%, 3년거치 2년상환
- 융자한도액 : 100백만원이내(법인경영체는 1,000백만원 이내)
- 융자단가
 - 자목1m²당(또는 툽밥배지100개, 종균100kg) : 112천원(기준단가 160천원의 70%)

(2) 표고재배시설

- 사업내용 : 표고원목재배·툽밥균상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건축물,관수 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등 재배시설비 지원
- 지원대상자 : 표고원목·툽밥균상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융자조건 : 연리 6.5%, 3년거치 7년상환
- 국고보조한도액 : 50백만원 이내(법인경영체는 500백만원 이내)
- 지원단가
 - 비닐하우스 시설 : m²당 8,800원(국고보조 4,400원, 국고융자 4,400원) 기준으로 지원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할 수 있음
 - 철골온실·툽밥균상재배시설 :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함
 - 기계·장비 :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함

(3) 표고원목 재배단지조성

- 사업내용 : 원목재배단지화를 위한 재배시설, 저장시설, 선별·포장기 지원
- 지원대상자 : 표고재배자로 조직된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재배시설, 저장시설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선별·포장기 : 국고융자 70%, 자부담 30%
- 융자조건 : 연리 6.5%, 3년거치 7년상환
- 지원단가(1개단지 지원기준)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	1단지	1,100,000	205,200	257,000	205,200	432,600
○ 재배시설	1단지	726,000	145,200	145,200	145,200	290,400
○ 저장시설	1개소	300,000	60,000	60,000	60,000	120,000
○ 선별·포장기	1조	74,000	-	51,800	-	22,200

※ 사업단가는 상기 내역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지역실정 및 지원대상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단지당 총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4) 표고 톱밥균상 재배단지조성

- 사업내용 : 톱밥균상재배단지화를 위한 배지생산시설, 톱밥균상재배시설, 재배자금, 저장시설, 선별·포장기 지원
- 지원대상자 : 표고재배자로 조직된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톱밥배지생산시설 톱밥균상재배시설, 저장시설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 톱밥균상재배자금, 선별·포장기 : 국고융자 70%, 자부담 30%
- 융자조건 : 연리 6.5%, 3년거치 7년상환

○ 지원단가(1개단지 지원기준)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	1단지	1,800,000	320,000	460,000	320,000	700,000
○ 톱밥배지생산 시설	1시설	1,000,000	200,000	200,000	200,000	400,000
○ 톱밥균상재배 시설	1단지	300,000	60,000	60,000	60,000	120,000
○ 저장시설	1개소	300,000	60,000	60,000	60,000	120,000
○ 톱밥균상재배 자금	1단지	126,000	-	88,200	-	37,800
○ 선별·포장기	1조	74,000	-	51,800	-	22,200

※ 사업단가는 상기 내역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지역실정 및 지원대상자의 사업 계획에 따라 단지당 총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5) 표고종균생산시설

- 사업내용 : 표고종균 시험·연구·생산을 위한 시설·장비·자재 지원
- 지원대상자 : 임협중앙회 임산미생물사업소
- 지원비율 : 국고보조 100%
- 국고보조한도액·단가 : 882,930천원 이내

(6) 밤작업로 시설

- 사업내용 : 밤나무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퍽 2m내외의 작업로를 토공사 위주로 시설
- 지원대상자 : 밤나무를 재배관리하는 산주(밤생산자)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10%
- 지원단가 : 현실단비(설계단비)를 지원하되 km당 3,000천원 이내
- 지원조건 : 연리 6.5%, 5년거치 5년상환

(7) 대추생산기반조성

- 사업내용 : 대추생산 기반조성으로 생산경영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조장 건조기, 관정 및 관수시설, 방제장비 등 시설·장비 지원
- 지원대상자 : 대추재배자 및 법인 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융자조건 : 연리 6.5%, 3년거치 7년상환
- 국고지원한도액 : 개별농가의 경우 16백만원(국고보조 8백만원, 국고융자 8백만원), 법인경영체의 경우 80백만원(국고보조 40백만원, 국고융자 40백만원)이내

(8) 야생화 생산기반 조성

- 사업내용 : 우리고유의 야생화자원을 적극 개발·보급하여 신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야생화 재배비 및 비닐온실시설·자재 지원
- 지원대상자 : 야생화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융자 70%, 자부담 30%
- 융자조건 : 연리 6.5%, 3년거치 2년상환
- 융자한도액·단가 : 1개소당 100백만원 이내

(9) 단기임산물 생산 지원

- 사업내용 : 산나물·산약초·산과실 재배비 및 시설·자재비, 송이생산환경개선 사업비, 청정무공해 임산물 재배비 및 자재(목탄·목초액·퇴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자 : 단기소득임산물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융자 70%, 자부담 30%
- 지원조건 : 연리 6.5%, 3년거치 2년상환
- 융자한도액·단가 : 1개소당 100백만원 이내

(10) 임산물 생산장비지원

- 사업내용 : 밤수집기, 약제살포기, 간벌목분쇄기, 표고자동천공기, 침수통 등 생산장비 구입 지원
- 지원대상자 : 단기소득임산물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융자 70%, 자부담 30%
- 지원조건 : 연리 4.5%, 3년거치 7년상환
- 융자한도액·단가 : 1대당 10백만원 이내

(11) 전문조합유통시설지원

- 사업내용 : 전문조합 중심으로 유통체제를 일원화하고 육성하기 위한 유통·가공시설비 지원
- 지원대상자 : 전문임업협동조합
- 지원비율 : 국고보조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국고보조한도액·단가 : 1,000백만원 이내

나. '99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읍 자		
계	-	46,838	25,392	7,357	18,036	5,824	15,621
<표고생산기반조성>	-	38,063	20,121	5,409	14,712	4,526	13,416
○ 표고생산자금지원	230개소	13,560	9,492	-	9,492	-	4,068
○ 표고재배시설	170개소	11,220	4,488	2,244	2,244	2,244	4,488
○ 원목재배단지조성	8단지	8,800	3,698	1,642	2,056	1,642	3,460
- 재배시설	8단지	5,808	2,323	1,162	1,162	1,162	2,323
- 저장시설	8개소	2,400	960	480	480	480	960
- 선별·포장기	8조	592	414	-	414	-	178
○ 톱밥균상재배단지조성	2단지	3,600	1,560	640	920	640	1,400
- 톱밥배지생산시설	2시설	2,000	800	400	400	400	800
- 톱밥균상재배시설	2단지	600	240	120	120	120	240
- 저장시설	2개소	600	240	120	120	120	240
- 톱밥균상재배자금	2단지	252	176	-	176	-	76
- 선별·포장기	2조	148	104	-	104	-	44
○ 표고중균생산시설	1개소	883	883	883	-	-	-
<기타 고소득임산물생산지원>	-	8,775	5,272	1,948	3,323	1,298	2,205
○ 밤작업로시설	820km	2,460	1,476	738	738	738	246
○ 대추생산 기반조성		850	370	210	160	160	320
- 생산시설장비	20개소	800	320	160	160	160	320
- 묘목검사장비	5개소	50	50	50	-	-	-
○ 야생화 생산기반 조성	16ha	1,482	1,318	-	1,318	-	565
○ 단기임산물생산지원	118개소	3,364	2,355	-	2,355	-	1,009
○ 생산장비지원	10대	100	70	-	70	-	30
○ 전문조합 유통시설지원	1개소	2,000	1,000	1,000	-	400	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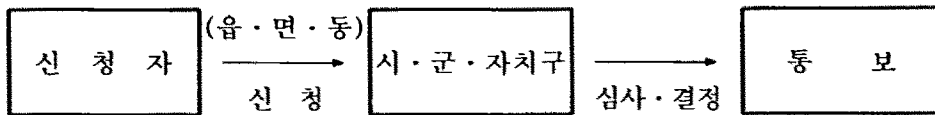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99 신규 계획된 대추생산기반조성 사업에만 적용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자치구(읍·면·동)

나.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대추재배자 또는 대추재배자로
조직된 법인경영체

다.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라.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 1부(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3호서식)
- 대출신청자료 1부(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4호서식)

마.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1) 주산단지내 생산량 및 재배경험이 많은 대추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2) 기타 대추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

※ 다만, 표고종균생산시설사업은 공공사업으로 임협중앙회가 사업주관기관임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임업정책국 임산물유통과(042-481-4135~6)
자원조성국 산림토목과(042-481-4285~7)
- 시·도 : 산림과(녹지과, 산지이용과, 산림환경과)등 산림담당부서
- 시·군 : 산림과(녹지과)등 산림담당부서
- 임협중앙회 : 임산유통부(02-416-9423)

다. 자금지원예정자

- (1) 전문조합유통시설지원 : 충청남도 공주밤임업협동조합
 - (2) 표고종균생산시설 : 임협중앙회 임산미생물사업소
- ※ 자금지원예정자가 다수인인 사업은 기재 생략함

라.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 선정
 - 자금지원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지 현지확인 후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
 - 대상자 선정시 고려할 사항
 - 사업경영 및 종사여부, 사업실적 등
 -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여부
 - 자부담능력 및 경영능력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계획 작성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출
 - 사업계획 및 변경 승인권자 : 시장·군수

※ 밤작업로시설의 경우 사업계획서는 장비임차, 투입계획 등에 의한 사업비 산출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비 지원방법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관할 임업협동조합 및 신청자에 통보
 - 보조금은 시·군에서 집행
 - 융자금은 지원대상자가 관할 임업협동조합에 융자신청
 - 임업협동조합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군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비용 부담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 사업담당자가 사업계획 및 일정에 맞게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지 분기 1회 지도방문 및 감독
 -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철저
 -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에 의한 시설물의 용도에 맞게 적정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 1회 확인 및 감독
 - 경영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연 1회 경영상태 평가 및 관리

- 임 협 : 용자금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표고재배시설	'99년도	2002년도	4년간	법인세법 시행규칙
툽밥배지생산시설	'99년도	2008년도	10년간	제27조 준용
저장시설	"	"	"	
유통시설	"	"	"	
중균생산시설	"	"	"	

나. 보고·기타

- 보조사업의 실적확인 및 보조금의 확정·정산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
- 시·도(시·군)는 지원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에 제출
(총공통 9)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용자금 집행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
(총민 49-1)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자치구(읍·면·동)

나. 신청자격

- (1) 표고생산자금지원 : 표고원목·툽밥균상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 (2) 표고재배시설 : 표고원목·툽밥균상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 (3) 원목재배단지조성 : 표고재배자로 조직된 법인경영체로서 사업신청당시 법인설립 2년이 경과된 생산자 조직
- (4) 툽밥균상재배단지조성 : 표고재배자로 조직된 법인경영체로서 사업신청 당시 법인설립 2년이 경과된 생산자 조직
- (5) 표고중균생산시설 : 임협중앙회 임산미생물사업소
- (6) 밤작업로시설
 - 밤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자로서 밤 생산·관리의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내외의 작업로를 시설하고자 하는 자
 - 지방도, 농로, 임도 등 기존도로를 기점으로 작업로 시설이 가능한 밤나무 집단재배지

(7) **대추생산기반조성** : 대추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8) **야생화 생산기반 조성** : 야생화 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로서 한국 자생 식물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9) **단기임산물 생산지원** : 단기소득임산물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10) **임산물 생산장비지원** : 단기소득임산물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11) **전문조합유통시설지원** : 전문임업협동조합

(12)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법인경영체의 범위**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임업협동조합, 지방공기업 등 법인중 단기소득 임산물을 사업대상품목으로 하는 법인

(13)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및 지원기준**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한하여 적용

○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 총출자액이 1억원이상인 법인
-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 출자액의 50% 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로 출자한 법인
-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법인경영체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 법인경영체가 생산하는 주생산 품목과 관계없이 일반적 필요에 의한 별도의 사업 하나만을 지원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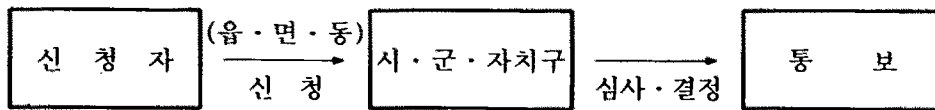
○ 법인경영체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등기부상의 출자가 조합원별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시·군에서 확인

○ 지원후에도 지원시설물이 법인명의로 등기실행되었는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를 확인후 정산

○ 법인경영체 지원시설의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이 직접 담당

- 정부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법인경영체는 매년도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군에 보고
 - 보고하지 않는 법인경영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실적은 공동생산, 출하, 가공, 유통, 수출, 농작업 대행 등 법인경영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에 한함
- 지원대상자 선정시 1회에 3일이상 시군의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 방법 등 교육을 이수한 법인경영체 우선 선정
- 위 기준외에 개별 사업에 대한 기준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름

다.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라.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 1부(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1항관련 별지 제3호서식)
- 대출신청자료 1부(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4항관련 별지 제4호서식)

마.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선정기준(공통사항) : 사업신청자중 다음 각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되, 최근 3년간('97~'99)동일한 사업을 지원 받은 자는 가장 후순위 적용
- 사업별 우선순위

(1) 표고생산자금지원, 표고재배시설

※ 법인경영체의 경우 다음의 ①~⑤순위의 재배자가 다수로 구성된 법인순으로 선정

- ① 주산단지내에서 표고재배경험이 5년이상이고 표고자목 3만본이상을 재배하는 자
- ② 주산단지내에서 표고재배경험이 5년이상이고 표고자목 3만본미만을 재배하는 자
- ③ 주산단지내에서 표고재배경험이 5년미만이고 표고자목 3만본이상을 재배하는 자
- ④ 주산단지내에서 표고재배경험이 5년미만이고 표고자목 3만본미만을 재배하는 자
- ⑤ 기타 표고재배자(주산단지이외지역의 표고재배자에 대한 우선순위로 상기 ①~④ 순위적용)

(2) 원목재배단지조성, 톱밥균상재배단지조성

- ① 회원이 다수인 법인경영체
- ② 생산량이 많은 법인경영체

(3) 표고종균생산시설 : 임협중앙회 임산미생물사업소

(4) 밤작업로시설 : 5ha이상 밤나무 재배자

(5) 대추생산 기반조성

- ① 주산단지내 생산량 및 재배경험이 많은 대추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② 기타 대추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6) 단기임산물 생산, 생산장비 지원

- ① 주산단지내 생산량 및 재배경험이 많은 단기소득임산물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② 기타지역의 단기소득임산물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7) 전문조합유통시설

- ① 조합원이 많은 전문임업협동조합
- ② 생산량이 많은 전문임업협동조합

II. 조경수·분재소재생산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임산물유통과(과장 남성현 행정사무관 최병암)입니다

1. 목 적

○ 조경수·분재 생산지원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수출 확대

2. 시책 및 추진방향

○ 분재·조경수 전업농 육성으로 경쟁력 강화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10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8조의2(자금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6년	'97년	'98년	'99년 (예산안)	2000년	2001-2004	
사업량 (ha)	계	672	250	209	223	223	892	
	조 경 수	425	180	161	174	174	696	
	분 재	247	70	48	49	49	196	
사업비 (백만원)	용 자	계	45,494	20,033	15,319	16,278	16,728	65,112
		조 경 수	31,231	13,200	11,771	12,701	12,701	50,804
		분 재	16,331	6,833	3,548	3,577	3,577	14,308
	자 부 담	계	31,846	14,023	10,724	11,395	11,395	45,580
		조경수	20,414	9,240	8,240	8,891	8,891	35,564
		분 재	11,432	4,783	2,484	2,504	2,504	10,016
	자 부 담	계	13,648	6,010	4,595	4,883	4,883	19,532
		조경수	8,749	3,960	3,531	3,810	3,810	15,240
		분 재	4,899	2,050	1,064	1,073	1,073	4,292

5. '99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1) 사업내용 : 조경수 및 분재소재 생산을 위한 포지(온실)조성 및 재배비 지원
- (2) 지원대상자 : 조경수 및 분재소재 생산자
- (3) 지원비율 : 국고융자 70%, 자부담 30%
- (4) 지원조건 : 연리 6.5%, 3년거치 5년상환(조경수), 3년거치 7년상환(분재)
- (5) 융자한도액 : 조경수 생산자는 100백만원이내, 분재소재생산자는 50백만원 이내
- (6) 융자단가 : ha당 51,100천원(기준단가 73,000천원의 70%)

나. '99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ha)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223	16,278	11,395	-	11,395	-	4,883
- 조 경 수	174	12,701	8,891	-	8,891	-	3,810
- 분재소재	49	3,577	2,504	-	2,504	-	1,073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기관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 이라 한다)

나. 사업담당 부서

- o 산림청 : 임업정책국 임산물유통과(042-481-4135~6)
- o 시·도 : 녹지(산림)과 등 산림담당부서
- o 시·군 : 산림과(녹지과) 등 산림담당부서

다. 사업시행

o 사업대상자 선정

- 자금지원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지 현지확인 후 사업추진에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
- 대상자 선정시 고려할 사항
 - 사업경영 및 종사여부, 사업실적 등
 -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여부
 - 자부담능력 및 경영능력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계획 작성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
 - 사업계획 및 변경승인권자 : 시장·군수
- 사업비 지원방법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관할 임업협동조합 및 신청자에 통보
 - 융자금은 지원대상자가 관할 임업협동조합에 대출 신청
 - 임업협동조합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군
 - 사업담당자가 사업계획 및 일정에 맞게 투자 또는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지 분기 1회 지도방문 및 감독
 -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철저
 - 융자금 집행현황 점검 및 사업실적 유지
 -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에 의한 시설물의 용도에 맞게 적정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 1회 확인 및 감독
 - 경영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연 1회 경영상태 평가 및 관리
- 임 협 : 융자금 사후관리.

나. 보고·기타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융자금 집행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총민-4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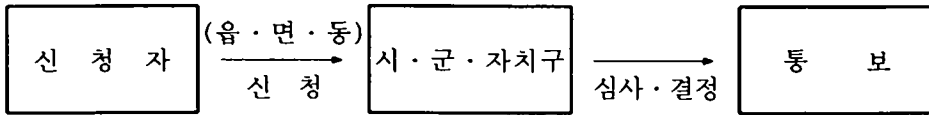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읍·면·동)

나. 신청자격

- 한국조경수협회 회원과 한국분재조합 조합원은 협회장 및 조합장의 추천(생산확인)을 받은자
- 비회원 및 비조합원은 임업협동조합장의 추천(생산확인)을 받은 자

다.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라. 구비서류

- 조경수(분재)소재 생산자금 융자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마.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① 조경수 생산포지 1ha이상, 분재소재 생산시설 330m' 이상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3년이상 생산·판매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생산포지(시설)를 증설하고자 하는 자
- ② 조경수 생산포지 1ha이상, 분재소재 생산시설 330m' 이상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3년이상 생산·판매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기존포지(시설)에서 보식 등 재배하고자 하는 자
- ③ 기타 조경수 및 분재소재 생산자

조경수(분재소재)생산자금 용자신청서

신청서	주소			전화번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사업명					
생산자금 (천원)	내역				
	계	용자	생산자 부담	기타	
세부사업계획		별첨			
생산기반시설	내역				
	포지면적		시설규모(온실 등)		장비보유사항
	m'		동, m'		대
영농경력		년 월 ~ 년 월 까지 (년 월)			
최종학력		년 월 학교 (졸업, 중퇴, 수료)			
영농교육 이수사항	기간		교육분야		실시기관명
	년 월 일 ~ 년 월 일				

- 붙임 1. 세부사업계획서
 2. 조경수(분재소재) 생산 사실확인 추천서
 3. 농림수산정책자금 용자신청 자료

위와 같이 년도 조경수(분재소재) 생산자금 용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 1>

세 부 사 업 계 획 서

생산수종별	소재지			지목	사용면적 (㎡)	수량 (본)	사업비 (천원)	비고
	읍면	리	지번					

<첨부 2>

조경수(분재소재)생산 사실 확인추천서

생산자	주 소			상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포지(생산시설)소재지				생 산 상 황				
시·군·읍·면	리·동	지번	지목	수종	수고 (cm)	수량 (본)	수령 (년)	실제면적 (m ²)
용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용자지원				제출처 : 시·군·구				

위 생산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한국조경수협회장 인

한국분재조합장 인

○○ 군 임업협동조합장 인

※ 해당 단체장의 직인을 받아야 유효함

Ⅲ. 산림복합경영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경영과(과장 김현식, 임업사무관 전범권)입니다.

1. 목적

- 생산기간이 긴 목재생산만으로는 임업경영이 어려우므로 산림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약재, 산채, 특용수, 조경수 등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판매하고 이를 가공판매하거나 휴양임업과 연계시키는등 복합적으로 경영하여 산주의 소득을 증대

2. 시책 및 추진방향

- 임업인 및 농업과 병행하여 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산림내의 복합 경영기반조성을 위한 지원
- 목재생산과 병행하는 복합경영 추진으로 산주소득 증진 및 장기적으로 목재 수급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3. 근거법령

- 임업진흥촉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재정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6년	'97년	'98년	'99년 (예산안)	2000년	2001- 2004
사업량(개소)		-	-	-	5	42	204
사 업 비	계	-	-	-	546	4,578	22,236
	보 조	-	-	-	109	916	4,447
	용 자	-	-	-	164	1,373	6,671
	지방비	-	-	-	109	916	4,447
	자부담	-	-	-	164	1,373	6,671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사업지원내용
 - 조경수, 특용수, 식용·약용·관상용(야생화 등)식물, 표고버섯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종자채취 및 구입, 산지묘포장 조성, 임내정리 및 식재
 - 임간방목등 조수사육에 필요한 작업로 및 울타리 설치
 - 임장관리 및 임산물 생산·가공·판매등을 위한 다용도관리사 시설
- 지원대상자 : 임업인 및 농업과 병행하여 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 3ha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자
 - 임업협동조합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농지 및 임야가 있어 농업과 임업을 병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융자조건 : 연리 6.5%,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국고보조·융자한도액 : 55백만원(국고보조 22백만원, 국고융자 33백만원)
 - 기존 산림청 지원사업(단기임산물 생산, 조경수·분재소재생산, 임산물 이용가공 및 저장시설)은 기존사업단비 산출근거를 준용하여 지원.
 - 기존산림청 지원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의 경우는 산출기초의 적용의 타당성과, 시장조사등을 통하여 결정 지원(지원비율은 변동없음)

나. '99년도 사업비(예산안)사업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5개소	546	273	109	164	109	164
복합경영	5개소	546	273	109	164	109	164

※ 예산범위내에서 사업량 조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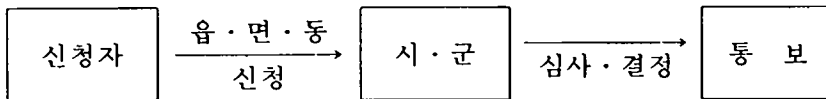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구

나. 신청자격

- 임업인 및 농업과 임업을 병행하고자 하는 자

다. 신청절차



라.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 1부(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1항 관련 별지제3호서식)
- 대출신청자료 1부(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제4호서식)

마.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① 3ha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② 농지 및 임야가 있어 농업과 임업을 병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 ③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④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자
- ⑤ 임업협동조합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경영국 산림경영과(042-481-4207)
- 시·도 : 산림과(녹지과, 산지이용과)
- 시·군 : 산림관련부서

다. 자금지원예정자

- 임업인 및 농업과 병행하여 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라. 사업시행

○ 대상자 선정

- 자금지원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대상지 현지확인 후 사업추진에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
- 대상지 선정시 고려할 사항
 - 산림경영 종사여부, 산림투자 실적 등
 -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여부(지황 및 임황 등의 입지여건이 추진하고자 하는 세부사업에 적합한지 판단)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에 따른 자부담 능력

○ 사업계획수립

- 임업인 및 농업과 병행하여 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업계획수립 : 사업신청자는 입지여건에 맞도록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 수립
- 자금소요액 : 세부사업별 사업실행에 필요한 비용(부대비용 포함)을 산출
- 품목선정 : 단기·중기·장기에 해당되는 품목을 균형있게 선정

○ 사업계획 및 변경승인

- 사업계획 : 시장·군수는 사업지 현지확인 후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계획 승인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추진중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당초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시장·군수에게 승인을 받아 실시
 - 시장·군수는 변경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계획 변경 승인

○ 사업비 지원방법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관할 임업협동조합 및 신청자에게 통보
- 보조금은 시·군에서 집행
- 대출금은 지원대상자가 관할 임업협동조합에 대출신청
- 임업협동조합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의거 자금지원을 하되 반드시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지원하고 사업완료전에 융자금 전액이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자금관리 철저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군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비용 부담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 사업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계획 및 일정에 맞게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지 지도·감독 철저
-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에 의한 시설물이 용도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지도·감독
-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철저
 - 경영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추후 이를 분석하여 경영상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관리
 - 점검·평가 결과에 따라 잘못된 점은 개선토록 하고 산물의 시장성·판로 등 지속적인 경영정보를 제공

○ 임 협 : 대출금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간	비 고
	부터	까지		
다용도관리사	'99	2005	6년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준용

나. 보고·기타

- 보조사업의 실적확인 및 보조금의 확정·정산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
- 시·도(시·군)는 지원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에 제출
(총공통-9)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대출금 집행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총민4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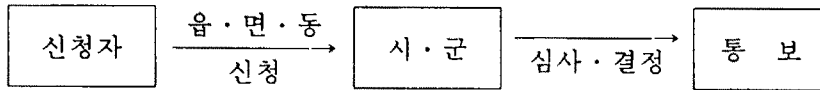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구

나. 신청자격

- 임업인 및 농업과 임업을 병행하고자 하는 자

다. 신청절차 :



라.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 1부(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1항 관련 별지제3호서식)
- 대출신청자료 1부(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제4호서식)

마.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① 3ha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② 농지 및 임야가 있어 농업과 임업을 병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 ③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④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자
- ⑤ 임업협동조합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임산물유통과(과장 남성현, 임업 사무관 고기연)입니다.

1. 목 적

- 임산물 이용가공 사업을 육성하여 국산재 이용촉진, 부가가치제고 및 산주소득증대
- 임산물의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여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2. 시책 및 추진방향

- 목재 및 단기소득임산물 이용가공시설의 확충과 현대화·규모화로 생산성 향상
- 국산 원자재 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국산재 이용 촉진
- 임산물 저장시설 확충으로 산지유통체계 개선
- 임산물 포장개선 및 표준출하규격 지원으로 유통비용 절감

3. 근거법령

- 임업진흥촉진법 제10조제1항(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 산림법 제109조제1항(자금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가. 임산물이용가공 및 원자재 구입자금

(단위:백만원)

구분	'92-'96년	'97년	'98년	'99년 (예산안)	2000년	2001-2004
사업량	759개소	55개소 (75천㎡)	28개소 (130천㎡)	31개소 (138천㎡)	30개소 (140천㎡)	120개소 (560천㎡)
사업비	계	75,817	26,246	22,711	24,329	105,000
	음자	53,072	18,372	15,897	17,030	73,500
	자부담	22,745	7,874	6,814	7,299	31,500

나. 단기소득임산물가공시설

(단위 : 백만원)

구분	'92-'96년	'97년	'98년	'99년 (예산안)	2000년	2001-2004
사업량(개소)	1	1	5	7	7	28
사업비	계	1,429	96	3,000	6,100	24,400
	보조	-	-	360	1,200	4,800
	음자	1,000	67	1,500	2,270	4,800
	지방비	-	-	360	1,200	4,800
	자부담	429	29	780	1,430	5,720

※ 밤 박피가공시설 포함

다. 임산물저장시설

(단위 : 백만원)

구분	'92-'96년	'97년	'98년	'99년 (예산안)	2000년	2001-2004
사업량(개소)	56	12	15	20	6,000	80
사업비	계	14,951	4,800	4,050	6,000	24,000
	보조	2,237	960	810	1,200	4,800
	음자	5,247	1,440	1,215	1,200	4,800
	지방비	1,165	960	810	1,200	4,800
	자부담	6,302	1,440	1,215	2,400	9,600

라. 임산물 포장개선 및 표준규격출하지원

(단위 : 백만원)

구분	'92-'96년	'97년	'98년	'99년 (예산안)	2000년	2001-2004
사업량(개소)	-	-	50	70	100	400
사업비	계	553	500	1,500	3,000	12,000
	보조	387	-	100	300	2,400
	음자	-	-	-	200	1,600
	지방비	-	-	100	300	2,400
	자부담	166	-	300	700	5,600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임산물 이용가공시설 및 원자재 구입자금

(가) 지원대상자

○ 임산물 이용가공시설

- 임산물 가공·이용과 관련한 공장등록을 필한 자(이하 “단기소득임산물의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포함)로서 노후시설 교체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
- 가공공장 신설을 위하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를 필하였거나 필하고자 하는 자

○ 원자재 구입자금

- 임산물 가공·이용과 관련한 공장등록을 필한 자(이하 “단기소득임산물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포함)로서 국내산 임산물 원자재를 구입코자 하는 자

(나) 지원단가

○ 임산물 이용가공시설 : '99년도 사업비 내용과 같음

○ 원자재 구입자금

- 원목의 경우 m³당 58,100원(융자기준원목가 : 83,000원/m³의 70%) 융자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실제구입금액의 70%까지 지원가능. 다만, 품목에 따라 연간 원자재 가공 및 대출이 1회전 이상인 경우는 1회전의 원자재 소요량을 파악하여 융자금액 결정

(예) 연간 소요량이 1,000m³이면서 원자재를 연중 2회전 가능할 경우에는 융자액 신청시 1회전 소요량 500m³에 대해서만 적용

(다) 지원조건

○ 임산물 이용가공시설

-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70%융자(국고융자 70%, 자부담 30%)
- 융자한도액 : 개소당 설계금액의 70% 이내

- 융자금리 : 연리 6.5% - 산주, 농특회계 대출사업 집행지침상 별도요건을 구비한 법인, 공익법인
연리 9.5% - 비산주로서 연리 5%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자
- 융자기간 : 10년(3년거치 7년상환)

○ 원자재 구입자금

-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70%융자(국고융자 70%, 자부담 30%)
- 융자한도액 : 사업자당 연간 5억원 이내. 다만, 목재가공업체의 경우 국산재 원목을 연간 8,000m³이상 사용자에게 대하여는 당해 시·군에 배정된 융자계획 금액의 50%를 1인당 5억원 이내에서 우선 융자 지원하고, 나머지 50% 금액은 시·군의 지원대상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이 경우 8,000m³ 이상 사용자는 연간 5억원 이내에서 중복결정 가능)
- 융자금리 : 연리 7%
- 융자기간 : 5년(3년거치 2년상환)

(2) 단기소득임산물가공시설

- 사업내용 : 밤, 표고, 대추 등 단기소득임산물 가공에 필요한 시설·기계·장비 지원
- 지원대상자 : 단기소득임산물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융자 70%, 자부담 30%
- 지원조건 : 연리 6.5%, 3년거치 7년상환
- 융자한도액·단가 : 420백만원(기준단가 600백만원의 70%)을 기준으로 융자 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할 수 있음

(3) 밤박피가공시설

- 사업내용 : 밤박피 등 가공에 필요한 시설·기계·장비 지원
- 지원대상자 : 밤생산자로 구성된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지원조건 : 연리 6.5%; 3년거치 7년상환
- 국고보조·융자한도액·단가 : 500백만원(국고보조 300백만원, 국고융자 200백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 가능

(4) 임산물저장시설

- 사업내용 : 밤, 표고, 대추, 송이, 산나물 등 단기소득임산물 냉동·저온저장에 필요한 시설(판넬조립식포함)·기계·장비지원
- 지원대상자 : 단기소득임산물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지원조건 : 연리 6.5%, 3년거치 7년상환
- 국고보조·융자한도액·단가 : 120백만원(국고보조 60백만원, 국고융자 60백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할 수 있음

(5) 임산물 포장개선

- 사업내용 : 단기소득임산물 포장자동화를 위한 기계구입 및 포장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자금지원
- 지원대상자 :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산물생산자단체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국고융자 20%, 자부담 40%
- 융자조건 : 연리 6.5%, 2년거치 3년상환
- 지원단가 : 40백만원(국고보조 20백만원, 국고융자 20백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 가능

(6) 임산물표준규격출하지원

- 사업내용 : 산림청에서 제정·고시한 「임산물표준출하규격」에 따라 규격 출하 하는 포장자재비 지원
- 지원대상자 : 임산물을 규격출하하는 밤·표고등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임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임업협동조합을 포함)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나. '99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내 용 별	사업량	단 비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 담
				계	보조	용 자		
계	개소		37,929	23,400	2,700	20,700	2,700	11,829
○ 칩가공시설	2	200	400	280	-	280	-	120
○ 통나무가공시설	5	300	1,500	1,050	-	1,050	-	450
○ 제재시설	15	200	3,000	2,100	-	2,100	-	900
○ 목각생산등 가공시설	2	250	500	350	-	350	-	150
○ 목재부산물 이용 유기질비료 가공 시설	1	1,000	1,000	700	-	700	-	300
○ 목탄·목초액 (죽탄)가공시설	5	700	3,500	2,450	-	2,450	-	1,050
○ 간벌목집성재 가공시설	1	3,000	3,000	2,100	-	2,100	-	900
○ 임산물원자재 구입	138천m'	0.083	11,429	8,000	-	8,000	-	3,429
○ 단기소득임산물 가공시설	3	-	2,100	1,470	-	1,470	-	630
○ 밤박피가공시설	4	1,000	4,000	2,000	1,200	800	1,200	800
○ 임산물저장시설	20	300	6,000	2,400	1,200	1,200	1,200	2,400
○ 임산물포장개선	10	100	1,000	400	200	200	200	400
○ 임산물표준출하 지원	50	10	500	100	100	-	100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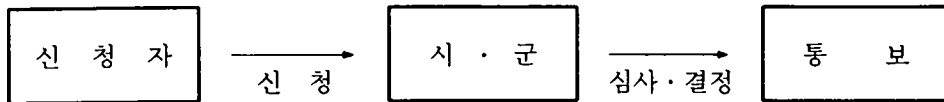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99 신규사업인 임산물포장개선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부분임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

나.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산물 생산자단체

다.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라.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 1부[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1항 관련 별지제3호서식]
- 대출신청자료 1부[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마.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① 주산단지내의 생산자 및 시·군의 임업협동조합 또는 주산단지내에서 연간 단기소득임산물을 5톤이상 생산하는 법인경영체
- ② 기타지역 생산자 및 임업협동조합 또는 연간 단기소득임산물을 5톤이상 생산하는 법인경영체
- ③ 기타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임업정책국 임산물유통과 (042-481-4135~8)
- 시·도 : 산림과(녹지과, 산지이용과, 산림환경과)등 산림담당부서
- 시·군 : 산림과(녹지과)등 산림담당부서

다. 자금지원 대상자

○ 지원 우선순위

- 임산물이용가공시설

- ① 노후화된 임산물 가공·이용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교체하거나 증설하고자 하는 자
- ② 임산물 가공·이용시설을 신설하고자 하는 자

- 원자재 구입자금

- ① 국내산 목재를 구입하여 가공하고자 하는 자
- ② 국내산 단기소득임산물을 구입하여 가공하고자 하는 자

라.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 선정

- 자금지원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지 현지확인 후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
- 대상지 선정시 고려할 사항
 - 사업경영 및 종사여부, 사업실적 등
 -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여부
 - 자부담능력 및 경영능력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계획 작성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출
- 사업계획 및 변경승인권자 : 시장·군수

○ 사업비 지원방법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관할 임업협동조합 및 신청자에게 통보
- 보조금은 시·군에서 집행
- 융자금은 지원대상자가 관할 임업협동조합에 융자신청
- 임업협동조합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체 여신관련규정에 의거 지원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군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비용 부담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 사업담당자가 사업계획 및 일정에 맞게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지 분기 1회 지도방문 및 감독
-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철저
 -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에 의한 시설물의 용도에 맞게 적정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1회 확인 및 감독
 - 경영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연1회 경영상태 평가 및 관리

○ 임 협 : 융자금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밤박피가공시설	'99년도	2008년도	10년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준용
임산물저장시설	"	"	"	
임산물 포장시설	"	"	"	

나. 보 고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융자금 집행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총공민 49-1)
- 보조사업의 실적확인 및 보조금의 확정·정산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 (총공통-9)
- 시·도(시·군)는 지원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에 제출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읍·면·동)

나.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99년도 사업시행요령 지원대상자와 같음

(1)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법인경영체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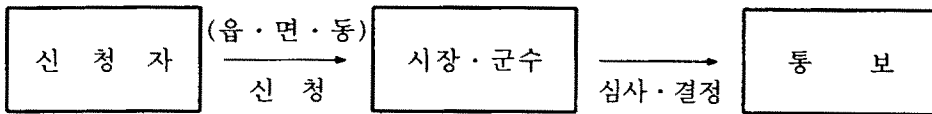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임업협동조합, 지방공기업 등 법인중 단기 소득임산물을 사업대상품목으로 하는 법인

(2)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및 지원기준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등에 한하여 적용
-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 총출자액이 1억원이상인 법인
 -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 출자액의 50% 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로 출자한 법인
 -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법인경영체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 법인경영체가 생산하는 주생산 품목과 관계없이 일반적 필요에 의한 별도의 사업 하나만을 지원할 수 없음
- 법인경영체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등기부상의 출자가 조합원별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시·군에서 확인
- 지원후에도 지원시설물이 법인명의로 등기실행되었는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를 확인후 정산
- 법인경영체 지원시설의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이 직접 담당

- 정부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법인경영체는 매년도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군에 보고
 - 보고하지 않는 법인경영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실적은 공동생산, 출하, 가공, 유통, 수출, 농작업 대행 등 법인경영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에 한함
- 지원대상자 선정시 1회에 3일이상 시군의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 등 교육을 이수한 법인경영체 우선 선정
- 위 기준외에 개별 사업에 대한 기준은 산림청장 따로 정하는 바에 따름

다.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라.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 1부(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 대출신청자료(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마.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임산물이용가공시설·원자재구입자금 : '99년도 「추진체계」 자금지원 예정자 지원 우선순위와 같음
- 단기소득임산물 가공시설
 - ① 주산단지내에서 연간 단기소득임산물을 10톤이상 생산하는 자
 - ② 주산단지내에서 연간 단기소득임산물을 5톤이상 생산하는 자
 - ③ 기타 지역에서 연간 단기소득임산물을 10톤이상 생산하는 자
 - ④ 기타 지역에서 연간 단기소득임산물을 5톤이상 생산하는 자
 - ⑤ 기타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 밤 박피가공공장
 - ① 연간 밤 생산량이 1천톤이상인 법인경영체
 - ② 수출위주로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경영체

○ 임산물 저장시설

- ① 주산단지내에서 연간 단기소득임산물을 10톤이상 생산하는 자
- ② 주산단지내에서 연간 단기소득임산물을 5톤이상 생산하는 자
- ③ 기타 지역에서 연간 단기소득임산물을 10톤이상 생산하는 자
- ④ 기타 지역에서 연간 단기소득임산물을 5톤이상 생산하는 자
- ⑤ 기타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 임산물포장개선

- ① 주산단지내의 생산자 및 시·군의 임업협동조합 또는 주산단지내에서 연간 단기소득임산물을 5톤이상 생산하는 법인경영체
- ② 기타 지역내의 생산자 및 임업협동조합 또는 연간 단기소득임산물을 5톤이상 생산하는 법인경영체
- ③ 기타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I. 임업협동조합 육성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임업정책과(과장 이장호, 행정사무관 이명수)입니다.

1. 목 적

- 사유림 경영 활성화의 주도적 역할과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임업협동조합의 자립 운영체제 구축을 위하여 지원

2. 시책 및 추진방향

- 지역조합 위주에서 품목별 생산자 중심 단체로 육성(전문조합 설립 및 지원)
- 임산물 유통전담기관으로 육성(집하장, 직매장, 종합처리장)
-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개발(신용사업추진, 신규사업개발)
- 임업협동조합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조합별 장기 발전방안을 마련 자금지원 결정

3. 근거법령

- 임업협동조합법 제7조(정부의 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92-'96년	'97년	'98년	'99년 (예산안)	2000년	2001~2004	
사업량	142조합	142조합	143조합	145조합	145조합	145조합	
사업비	계	27,419	8,622	12,212	13,410	13,410	65,140
	보 조	5,188	991	706	705	705	2,820
	용 자	15,510	6,155	10,800	12,000	12,000	59,500
	지방비	3,399	687	706	705	705	2,820
	자부담	3,322	789	-	-	-	-

5. '99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조건	사업시행체계
보 조	조합운영비보조	143개조합	정상(70) 6,000천원 (국고 50%,지방비 50%) 보통(51) 12,000천원 (국고 50%,지방비 50%) 기초(21) 18,000천원 (국고 50%,지방비 50%)	산림청→시·도→ 시군→임협조합
임업진흥 기금융자	임산물유통시설 운영 자금, 조합자체사업, 작업단 운영, 전문조합 설립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사업 실행사업비 융자	145개조합	120억원 연리 3% 1년거치 1년상환	산림청→임협중앙회 →임협조합

나. '99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보조:일반회계,융자: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143조합	13,410	12,705	705	12,000	705	-
o 조합운영비	143조합	1,410	705	705	-	705	-
o 임협육성	143조합	12,000	12,000	-	12,000	-	-

*융자조건 : 연리 3%, 1년거치후 1년상환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임업정책과(042 - 481 - 4098~9)
- 임협중앙회 : 금융부(02 - 416 - 9421~2)

다. 대상자 선정

(1) 대출선정기준

- 민유림작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실행사업비
- 자체특화사업 및 신규개발사업비
- 임산물직매장 시설·운영, 임산물공판·수매·수집 사업비
- 전문조합설립 기반 시설 사업비
- 목재주택 사업육성을 위한 국산재 구입비

(2) 대출선정절차(대출)

- 임업협동조합 사업은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
- 중앙회(소속기관 포함) 직영사업은 산림청장의 승인후 용자실시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군 : 사업자의 사업추진 지도·감독
- 임협중앙회 : 대출금 사후관리

나. 보고·기타

- 시·군 : 년 1회이상 점검·확인, 시·도에 보고
- 임 협 : 년 4회이상 용자사업 추진상황을 중앙회에 보고, 중앙회는 종합하여 분기말 산림청에 보고(총민 49-1)

II. 임산물 생산자조직 육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임산물유통과(과장 남성현, 행정 사무관 이규태)입니다.

1. 목 적

- 생산자 조직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조직의 활성화 및 규모화를 촉진하고 임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생산자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

2. 시책 및 추진방향

- 임산물 생산자의 조직화·내실화 유도 및 우수조직 집중지원으로 생산자 조직을 산지유통의 핵심체로 육성
- 임산물 직거래 매취사업 지원으로 직거래 활성화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7조(기금의 운용)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6년	'97년	'98년	'99년 (예산안)	2000년	2001-2004
사 업 량(개소)		-	-	-	-	-	-
사 업 비	계	76,392	27,975	30,000	46,500	50,000	200,000
	용 자	61,113	22,380	24,000	37,200	40,000	160,000
	자부담	15,279	5,595	6,000	9,300	10,000	40,000

※ '92~'98년은 품목별생산자조직육성, 출하조절사업 및 임산물생산자단체 회원조합 육성사업으로 지원한 내역임

5. '98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임산물 생산자조직 육성사업

- 배 경
 - '85~'97 지원한 출하조절사업, '95~'97 지원한 품목별생산자 조직육성사업 및 '98 임산물생산자단체회원조합 육성사업을 본 사업으로 통합
- 지원대상자 : 임산물생산자조직(법인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금 리 : 연리 5%
 - 기 간 : 1년이내
- 융자한도액 : 2,000백만원이내
- 융자단가 :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에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지원종류 : 밤, 표고, 대추, 산나물 등 단기소득임산물 수매·출하조절, 산지유통·생산시설 및 장비구입비

(2) 임산물 직거래 사업

- 배 경
 -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유통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임산물 직거래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생산자·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
- 지원대상자 :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
- 지원비율 및 융자조건 : 임산물 생산자조직 육성사업과 동일함
- 융자한도액 : 100백만원이내
- 융자단가 :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에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지원종류 : 밤, 표고, 산나물 등 단기소득임산물의 직거래 판매를 위한 매취사업비

나. '99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 계	예산액(농안기금)					
			계	보 조	용 자			
계	-	46,500	37,200	-	37,200	-	9,300	
○ 임산물생산자조직 육성사업	-	45,750	36,600	-	36,600	-	9,150	
○ 임산물 직거래 사업	-	750	600	-	600	-	150	

※ 융자조건 : 연리 5%, 1년 이내

<추진체계>

가. 임산물 생산자조직 육성사업

(1) 사업주관기관 : 임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

(2)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임업정책국 임산물유통과(042-481-4131~4)
- 임업협동조합
 - 중앙회 임산유통부(02-416-9423)
 - 도지회 관리과(지도검사과)
 - 시·군 임업협동조합 금융과(지도과)
- 농업협동조합
 - 중앙회 원예특작부(02-397-5726)
 - 도지회 유통가공과(지도과)
 - 시·군(읍·면) 농업협동조합 지도판매과

(3) 사업시행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임업협동조합 및 단위농업협동조합

(나)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임산물 생산자조직(법인경영체)

(다)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법인경영체의 범위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임업협동조합, 지방공기업 등 법인중 단기 소득임산물을 사업대상 품목으로 하는 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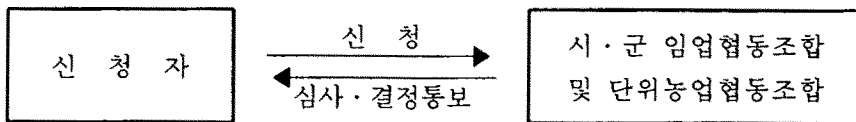
(라)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및 지원기준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한하여 적용

-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 총출자액이 1억원이상인 법인
 -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 출자액의 50% 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농지, 시설 등)로 출자한 법인
 -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법인경영체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 법인경영체가 생산하는 주생산 품목과 관계없이 일반적 필요에 의한 별도의 사업 하나만을 지원할 수 없음
- 법인경영체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등기부상의 출자가 조합원별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시·군에서 확인
- 지원후에도 지원시설물이 법인명의로 등기실행되었는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를 확인후 정산
- 법인경영체 지원시설의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이 직접 담당
- 정부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법인경영체는 매년도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군에 보고
 - 보고하지 않는 법인경영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실적은 공동생산, 출하, 가공, 유통, 수출, 농작업 대행 등 법인경영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에 한함
- 지원대상자 선정시 1회에 3일이상 시군의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 등 교육을 이수한 법인경영체 우선 선정
- 위 기준외에 개별 사업에 대한 기준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름

(마) 신청시기 : '99. 1. 1~1. 31

(바)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사) 구비서류 : 임산물생산자조직 육성 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아)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①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사업 평가결과 최상위 조직으로 평가된 법인경영체
- ② 임산물표준출하규격에 따른 공동출하 실적이 우수한 법인경영체
- ③ 주산단지내 회원이 다수인 법인경영체
- ④ 유통시설 및 장비구입사업을 희망하는 법인경영체
- ⑤ 기타 법인경영체

(자) 사업시행요령

- 법인경영체 :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99. 1. 31까지 시·군 임업협동조합 및 단위농업협동조합에 제출
- 시·군 임업협동조합 및 단위농업협동조합 : 법인경영체의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99. 2. 10까지 임협중앙회(도지회) 및 농협중앙회(도지회)에 제출
- 임협중앙회 및 농협중앙회
 - 법인경영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종합정리하여 품목별·사업종류별·지원예정 법인경영체별·지원예정시기별 내역을 작성하여 '99. 2월말까지 산림청에 제출하고 지원예정자에게 통보
- 산림청 : 지원예정시기별 자금배정을 농림부에 요청하고 임협중앙회 및 농협중앙회에 통보

나. 임산물 직거래사업

(1) 사업주관기관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2)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임업정책국 임산물유통과(042-481-4131~4)
- 임업협동조합
 - 중앙회 : 임산물유통부(02-416-9423)
 - 도지회 : 관리과(지도검사과)
 - 시·군 : 임업협동조합 지도과(금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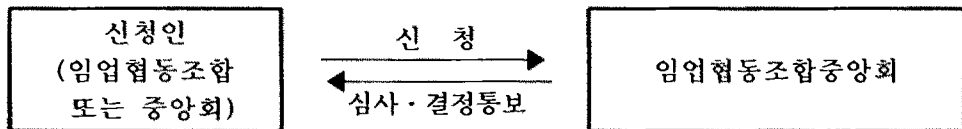
(3) 사업시행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다) 신청시기 : '99. 1. 1~1. 31

(라)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마)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① 임산물 직매장 등 유통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
- ② 기타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바) 사업시행요령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사업신청인의 신청을 받은 사업계획을 종합정리하여 품목별·지원예정자·지원예정시기별 내역을 작성하여 '99. 2월말까지 산림청에 제출하고 지원예정자에게 통보
- 산림청장은 지원예정시기별 자금배정을 농림부에 요청하고 임협중앙회에 통보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1) 임산물 생산자조직 육성사업

- 시·군 임업협동조합 및 단위농업협동조합 : 읍자금 사후관리
- 임협중앙회 및 농협중앙회 : 법인경영체별 사업추진 현황

(2) 임산물 직거래 사업

- 시·군 임업협동조합 : 융자금 사후관리
- 임협중앙회 : 사업추진 현황 및 융자금 사후관리

나. 보고·기타

- 임협중앙회장 및 농협중앙회장은 융자금 집행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 (총민49-1)
- 임협중앙회장은 직거래 사업추진 현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
- 임산물 생산자조직 육성사업의 경우 담보물이 부족한 법인경영체에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법인경영체의 회원명의로 대출할 수 있음. 이 경우, 대출금은 법인경영체의 사업에 집행되어야 하며 대출기관은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함
- 임산물 생산자조직 육성사업의 경우 임협중앙회장 및 농협중앙회장은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융자금 지원시 우대금리, 인센티브 부여 및 감액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99년도 사업시행요령 참조. 단, 신청시기는 2000. 1. 1~1. 31까지임

【별지 제1호서식】

임산물 생산자조직육성 사업신청서

1. 조직현황

법인경영체명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설립일자			설립법적근거			
조합원수			출자금액	천원		
시설현황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수송차량			기타
	m'	m'	대			
재배현황	구분	품목				
	면적(ha,m')		생산량(톤)			
기타특기사항	공동출하실적 :		톤			

2. 사업계획

세부사업명	단위	사업량	사업비			사업소재지
			계	용자	자부담	

199

신청인 법인경영체명

성명(대표자)

(인)

○○임업협동조합장 귀하

○○농업협동조합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임산물유통과(과장 남성현, 행정사무관 이규태)입니다.

1. 목 적

- 산지(產地)와 소비지의 직거래 유통체계 구축으로 유통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생산자 소득향상과 수급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임산물 유통기반시설 확대 설치
- 수출유망 임산물에 대한 포장·운송, 시장개척, 원자재구입, 선별·가공·운송 기계화 등을 지원하여 수출확대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임산물 유통시설의 확대설치로 직거래 유통활성화 기반 구축
- 대규모 소비지에 농림수산물물류센타 설치로 대량 직거래 유통 체계 구축
- 제2차 임산물종합유통센타 설치로 고부가가치 목제품 생산을 통한 국산재 활용 촉진, 목재자급율 제고 및 산주소득증대 도모
- 간벌·소경재 수집·운반·가공장비 지원으로 국산재 생산·이용촉진 도모
- 수출시 장기간 운송에 따른 임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상품가치 보존을 위한 포장자재의 고급화 유도

3. 근거법령

- 임업진흥촉진법 제5조(재정지원), 제8조(유통구조개선)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6조(농수산물의 수출촉진)

4. 연도별 지원계획

가. 임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6년	'97년	'98년	'99년 (예산안)	2000년	2001-2004	
사업량(개소)	56	15	15	17	17	68	
사 업 비	계	25,017	6,668	8,258	8,796	8,796	35,184
	보 조	8,028	3,334	4,129	4,278	4,278	17,112
	용 자	-	-	-	240	240	960
	지방비	-	1,334	1,652	1,640	1,820	7,280
	자부담	16,989	2,000	2,447	2,638	2,458	9,832

나. 농림수산물 종합물류센터 설치사업(임산물 분야)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6년	'97년	'98년	'99년 (예산안)	2000년	2001-2004
사업량(개소)	-	-	-	2	(2)	(2)
사업비	계	-	-	1,429	7,257	4,771
	보조	-	-	1,000	5,080	3,340
	지방비	-	-	429	2,177	1,431

다. 유통·가공지원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6년	'97년	'98년	'99년 (예산안)	2000년	2001-2004	
사업량	-	-	-	-	-	-	
사업비	계	18,963	9,150	6,835	19,737	22,596	46,154
	보조	16,143	1,258	4,888	1,815	5,004	25,368
	용자	1,308	5,284	1,191	14,043	11,200	12,586
	자부담	1,512	2,608	756	3,879	2,050	8,200

※ 사업량은 세부사업별 단위가 상이하므로 '99년도 사업비 내용 참조

라. 우수임산물 수출촉진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93-'96년	'97년	'98년	'99년 (예산안)	2000년	2001-2004	
사업량(톤)							
사업비	계	452	113	920	7,441	8,799	49,251
	보조	316	79	460	2,000	2,428	14,618
	용자	-	-	-	2,800	3,200	16,600
	자부담	136	34	460	2,641	3,171	18,033

※ 사업량은 세부사업별 단위가 상이하므로 '99년도 사업비 내용 참조

5. '99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임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

- 사업내용 : 임산물직매장, 목재종합집하장 설치 및 임산물공판시설 설치
- 지원대상자 :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
- 사업규모 : 지역여건에 따라 사업시행조합에서 결정
- 지원규모 : 유통시설 설치 사업비(목재종합집하장 부지매입비 포함)
- 지원기준
 - 임산물 직매장 및 목재종합집하장 : 국고보조 50%, 지방비 보조 20%
자부담 30%
 - 임산물 공판시설 :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40%, 지방비 30%
 - ※ 융자조건 : 연리 6.5%(3년거치 7년상환)

(2) 농림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설치사업(임산물 분야)

- 사업내용
 - 대규모 소비지역에 대량 직거래가 가능한 종합직거래유통센터 설치
 -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생산자단체(임·농·축·수협)가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에 참가
 - 사업기간 및 개소 : '99~2002(4개년), 2개소
 - ※ 산림청,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 공동으로 사업 추진
- 지원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 사업규모 : 부지(30,000평), 건물(17,000평)
- 지원규모 : 임산물 분야는 총 지원규모의 5%임
 - 총 사업비(개소당) : 1,345억원(부지매입비 750, 건설공사비 595)
 - ※ 임산물 분야 총 사업비 : 67억원(부지매입비 37, 건설공사비 30)
 - '99년(1차년도) 총 지원규모 : 총 사업비중 부지매입비 100억원(개소당)
 - ※ '99 임산물 분야 지원규모 : 5억원('99 지원 부지매입비의 5%)
- 지원기준 : 국고보조 70%, 지방비 보조 30%

(3) 유통·가공지원사업

(가) 사업내용

- 제2차 임산물종합유통센터 설치
 - 국산재 생산량이 많은 영동권에 설치('99~2001, 3개년)
 - '99년(1차년도) 지원 내용 : 부지매입비, 설계비(기본조사, 실시설계, 감리부대비)
- 직거래 판매사업 및 구판업무
 - 임시장터, 순회판매 등 직거래장터 운영 확대
 - 대규모 소비지역 중심의 상설직판장 설치·운영(상설직판장 임차비 및 원료구입비)
 - 구판업무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 간벌재 활용장비
 - 국산재 생산비 절감 및 이용도 제고에 필요한 수집·운반·가공장비 구입비 지원

(나) 지원대상자 :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다) 지원조건

- 지원비율
 - 제2차 임산물종합유통센터 설치
 - 부지매입비 : 국고융자 70%, 자부담 30%
 - 설계비 : 국고보조 100%
 - 직거래 판매 및 구판사업
 - 직거래 장터 및 상설직판장 원료구입비 : 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상설직판장 임차비 : 국고융자 100%
 - 직거래 및 구판업무 전산화 :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40%, 자부담 30%
 - 간벌재 활용장비 : 국고보조 70%, 자부담 30%
- 융자조건
 - 제2차 임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매입비 : 연리 6.5%(5년거치 10년상환)

- 직거래 판매 및 구판사업
 - 상설직판장 임차비 : 연리 4.5%(3년거치 7년상환)
 - 직거래장터 운영 및 상설직판장 원료구입비 : 연리 4.5%(3년거치 7년상환)
 - 구판업무 전산화 : 연리 4.5%(3년거치 7년상환)

(4) 우수임산물 수출촉진사업

○ 사업내용

- 우수임산물 수출활성화 사업 : 수출 포장·운송비, 포장기계 구입비, 포장 디자인 개발비, 밤 선별기·외피박피기 구입비, 신선 임산물 운송용 냉동탑차 구입비 지원
- 우수임산물 해외개척사업 : 수출홍보물 제작, 시장개척단 파견, 한·일 밤 간담회 지원
- 수출원자재 구매지원사업 : 국산 원자재 구매 지원

○ 지원대상 : 임산물을 수출하는 업체, 임업협동조합

○ 지원비율 및 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계	국 고 지 원				자부담
		소계	지원유형	지원비율	'99예산	
계	7,441	4,800			4,800	2,641
우수임산물 수출활성화 사업	3,280	1,839			1,839	1,441
- 우수임산물 포장운송비	1,250	625	보조	50%	625	625
- 포장기계장비 구입	400	200	보조	50%	200	200
- 포장디자인 개발	14	14	보조	100%	14	-
- 수출용 밤 선별기 구입	156	78	보조	50%	78	78
- 수출용 밤 외피박피기 구입	500	250	보조	50%	250	250
- 수출 임산물 운송차량 구입	960	672	보조	70%	672	288
우수임산물 시장개척사업	161	161			161	-
- 수출홍보물제작 지원	36	36	보조	100%	36	-
- 시장개척단 지원	101	101	보조	100%	101	-
- 한·일 밤 간담회 지원	24	24	보조	100%	24	-
수출원자재 구매지원사업	4,000	2,800	융자	70%	2,800	1,200

※ 수출원자재 구매지원사업

- 융자조건 : 연리 6.5%, 2년거치 3년상환
- 융자한도액 : 사업자당 연간 5억원 이내, 다만, 전체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할 수 있음

나. '99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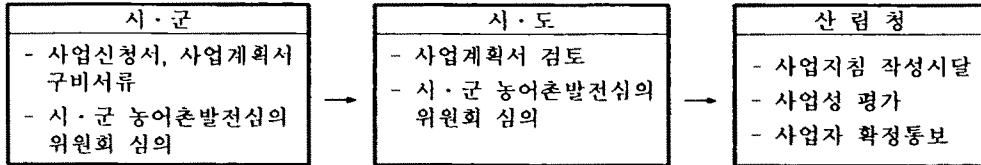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계	예 산 액(일반,농특)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37,403	26,176	9,093	17,083	2,069	9,158
○ 임산물유통시설 설치	17개소	8,796	4,518	4,278	240	1,640	2,638
- 임산물직매장	14 "	7,588	3,794	3,794	-	1,518	2,276
- 목재종합집하장	1 "	608	304	304	-	122	182
- 임산물공판시설	2 "	600	420	180	240	-	180
○ 농림수산물종합유통 센터(임산물분야)	2개소	1,429	1,000	1,000	-	429	-
○ 유통·가공지원		19,737	15,858	1,815	14,043	-	3,879
- 제2차 임산물 종합유통센터설치		2,372	1,778	392	1,386	-	594
· 부지매입비	100천㎡	1,980	1,386	-	1,386	-	594
· 설계비		392	392	392	-	-	-
- 직거래판매 및 구 판사업		16,893	13,750	1,093	12,657		3,143
· 상설직판장임차비	5개소	3,000	3,000	-	3,000	-	-
· 원료구입비	10개소	10,250	8,200	-	8,200	-	2,050
· 구판업무전산화		3,643	2,550	1,093	1,457		1,093
- 간벌재 활용장비	6종	472	330	330	-	-	142
○ 임산물 수출 촉진 사업		7,441	4,800	2,000	2,800	-	2,641
- 우수임산물수출 촉진사업		3,280	1,839	1,839	-	-	1,441
- 우수임산물 시장 개척사업		161	161	161	-	-	-
- 수출원자재 구입자금		4,000	2,800	-	2,800	-	1,200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99신규사업인 임산물공판시설, 제2차 임산물종합유통센터 설치, 직거래 판매사업에 적용되는 부분임

가. 임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임산물 공판시설)

- (1)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 (2) 신청자격 : 임업협동조합
- (3) 신청절차



(4) 구비서류

o 임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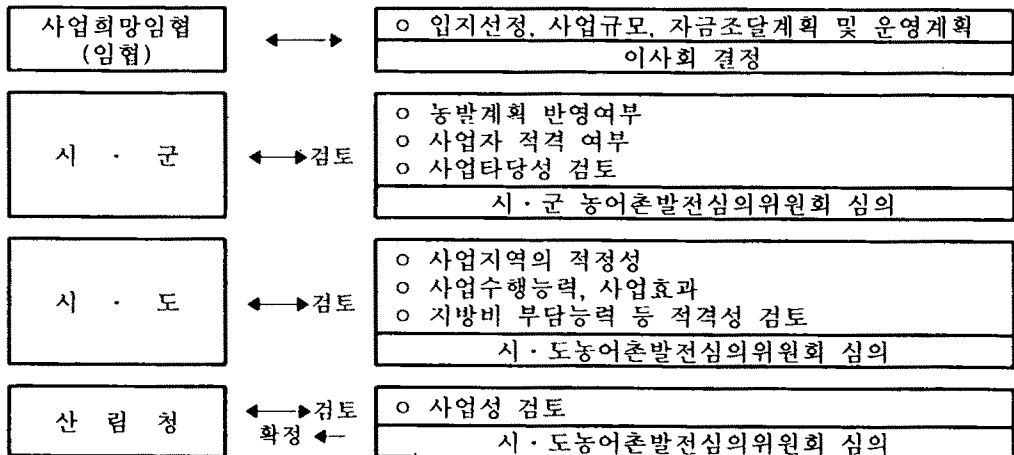
(5)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및 선정절차

가) 지원대상자 : 밤·표고 등 단기소득임산물이 다량 생산되거나 수집등이 용이한 시·군 임업협동조합

나)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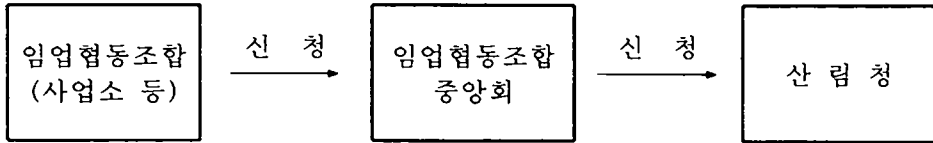
- ① 주산단지가 있는 시·군(표고의 경우 재배단지가 유치된 시·군 포함)중 지역내 공판시설이 없는 지역 임업협동조합
- ② 기타 시·군중 지역내 공판시설이 없는 지역 임업협동조합
- ③ 기타 지역 임업협동조합

다) 선정절차



나. 유통·가공지원사업(제2차 임산물종합유통센터, 직거래 판매사업)

- (1) 신청서 제출기관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 (2)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자 :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
- (3) 신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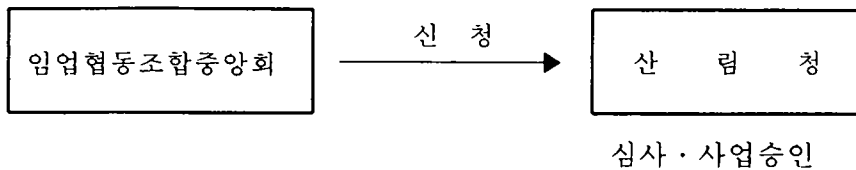
- (4) 구비서류
 - o 사업계획서(필요성, 타당성, 경제성, 사업효과, 운영방안 등)
 - 직거래 판매사업의 경우 직거래 원료구입 품목 및 수량 등을 명시할 것

(5)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및 선정절차

가) 우선순위(직거래 판매사업의 경우)

- ① 임산물직매장 등 유통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
- ② 기타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선정절차



<추진체계>

가. 임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 (1) 사업주관기관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
- (2) 사업담당부서
 - o 산림청 : 임업정책국 임산물유통과(042-481-4131~4)
 - o 시·도 : 산림과(녹지과)등 산림담당부서
 - o 시·군 : 산림과(녹지과)등 산림담당부서
- (3) 자금지원예정자 :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

(4) 사업시행

(가)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지원대상자로 확정·통보받은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세부 시설계획(부지위치·면적, 건물면적·용도, 구입기계·장비명 등)과 시설 공사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
- 시·군은 시·도를 경유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산림청에 제출
- 사업계획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피한 경우 다음에 따라 처리하고 산림청장에게 보고
 - 지원금액(국고)의 변동을 요하는 계획 변경, 사업자 및 설치장소 변경
: 산림청장 승인
 - 지원금액 범위내에서의 계획 변경 : 시·도지사 승인
 - 기타 경미한 사항: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승인

(나) 사업비 지원방법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보조금의 내시 및 자금배정 : 산림청장
 - 보조금 교부결정 : 시·도지사(시장·군수)
 - 보조금 배정 : 산림청장 → 시·도지사 → 시장·군수
 - 보조금 지급신청 : 조합장 → 시장·군수 → 시·도지사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
 - 시·도지사 책임하에 검정 및 정산 실시
 - 당해년도 국고지원을 받는 지역은 그 결과를 다음해 1월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름
- 사업자로 확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로서 자격을 취소하고 사업자금지원을 회수 또는 중단할 수 있음

나. 농림수산물 물류센터 설치사업(임산물 분야)

(1)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2) 사업담당부서

- 산 립 청 : 임업정책국 임산물유통과(042-481-4131~4)
- 지방자치단체 : 산림과(녹지과) 등 산림담당부서

(3) 자금지원예정자 :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4) 사업시행

(가) 사업계획 수립 및 배경

- 농림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설치 사업계획(농림부 주관)에 따름
- 다만, 임산물 분야에 관하여 산림청장이 승인한 사업계획서 및 보조사업비 등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변경 승인을 받아 실행

(나) 사업비 지원방법

- 보조금 내시 및 자금배정 : 임산물 분야 소요 국고보조금은 산림청에서 지원
 - 부지매입비는 부지매입 계약체결 후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가 산림청에 신청
- 보조금 검정 및 정산
 - 서울특별시장 책임하에 검정 및 정산실시
 - 서울특별시장은 당해년도에 지원 받은 보조금 집행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보조금의예산관리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 보조금 내시 및 자금배정 : 임산물 분야 소요 국고보조금은 산림청에서 지원

다. 유통·가공지원사업

(1)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2)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임업정책국 임산물유통과(042-481-4131~4)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 임산유통부(02-416-9423~4)

(3) 자금지원예정자 :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

(4) 사업시행

(가)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시설규모, 구입자명, 개발내용 및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
- 융자금은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산림청에 신청 지원
- 산림청장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와 보조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승인을 받아 실행

(나) 사업비 지원방법

- 산림청에서 국고보조금(민간자본보조)으로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지원
- 융자금은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산림청에 신청, 지원

라. 우수임산물 수출촉진사업

(1)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2)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임업정책국 국제협력과(042-481-4145~7)

(3) 자금지원예정자 : 임산물 수출업체, 임업협동조합

(4) 사업시행자

- 우수임산물 수출 활성화 사업, 수출원자재 구매지원사업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
- 우수임산물 시장개척사업 :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5) 사업시행

(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임산물을 수출하였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자 또는 임업협동조합
- 우선순위(자금배정)
 - 과거 2개년도 임산물 수출실적이 많은 자
 - 당해년도 임산물 수출신용장 수취자
 - 당해년도 임산물 수출계획이 있는 자

(나) 선정절차

- 일반공고→지원대상자 신청서 접수→지원대상자 선정 및 연간지원금 배정

(다)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시행기관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서 당해년도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사업담당부서와 협의
- 사업비 지원방법
 - 자금집행 절차는 국고보조금 집행에 관한 법률, 보조금 집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집행함

<행정사항>

가. 임산물 유통시설 설치

(1)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됨
 - 시장·군수는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비용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 시설물의 소유 및 사후관리는 해당임협이 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도·감독 책임
- 해당조합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시설물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는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와 임협중앙회장은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사·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음.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기간내 시설물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
- 본 시설물을 사후관리기간내에 처분하고자 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건물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 분 제 한 기 준	비 고
	부 터	까 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2) 보고·기타

- 시·도지사는 유통시설공사 추진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산림청에 보고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를 경유하여 다음해 1월31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산림청장에게 제출(총공통-9)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시설 운영실적을 평가 분석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매반기 익월 20일까지 산림청에 보고하고 용자금 집행실적을 다음해 1월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총민49-1)

나. 농림수산물 물류센터 설치(임산물 분야)

(1)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2) 보고·기타

- 서울특별시장은 공사추진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을 지고 추진상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은 서울특별시장 책임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1월31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산림청장에게 제출

다. 유통·가공지원

(1)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됨
- 시설물과 기계장비의 소유 및 사후관리는 해당조합 또는 사업소에서 하고,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감독책임을 짐
- 해당조합 또는 사업소는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시설·장비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사·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 분 제 한 기 준	비 고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배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내용연수 적용	"	

(2) 보고·기타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99. 12. 20까지 보조사업실적을 산림청장에게 제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융자금 집행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총민 49-1)

라. 우수임산물 수출촉진사업

(1) 사후관리

- 수출계약 체결업체에 대한 수출이행 여부 확인
- 사업시행기관은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현장점검 포함)
- 수출실적 점검 및 사업실적 평가후 차등 지원등 조치
- 포장기계장비구입, 수출용 밤 선별기, 박피기구입, 수출임산물 운송차량 구입사업은 사업비 지원후 기계장비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운영실적이 부진한 경우 시정조치(운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 자금회수 조치 등)

(2) 보고·기타

- 연간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보고 및 정산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안내

가. 임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

(1)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2) 신청자격

1) 임산물을 생산자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판매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산물 생산자 조직(법인경영체)

2)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법인경영체의 범위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 지방 공기업 등 법인중 단기소득 임산물을 사업대상품목으로 하는 법인

3)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및 지원기준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한하여 적용

○ 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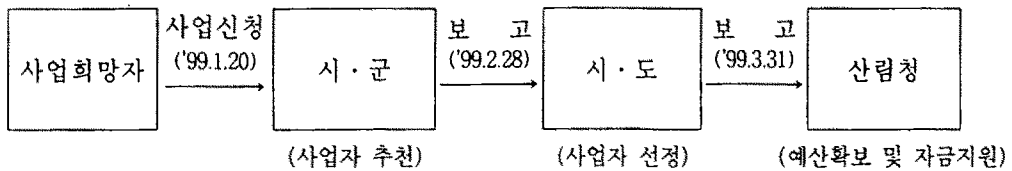
- 총출자액이 1억원이상인 법인
-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 출자액의 50%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로 출자한 법인
-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법인경영체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 법인경영체가 생산하는 주생산 품목과 관계없이 일반적 필요에 의한 별도의 사업 하나만을 지원할 수 없음.

- 법인경영체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등기부상의 출자가 조합원별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시·군에서 확인
- 지원후에도 지원시설물이 법인명으로 등기실행되었는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를 확인후 정산
- 법인경영체 지원시설의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이 직접 담당
- 정부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법인경영체는 매년도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군에 보고
 - 보고하지 않는 법인경영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실적은 공동생산, 출하, 가공, 유통, 수출, 농작업 대행 등 법인경영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에 한함.
- 지원대상자 선정시 1회에 3일이상 시·군의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 등 교육을 이수한 법인경영체 우선 선정
- 위 기준외에 개별사업에 대한 기준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름.

(3) 신청절차 및 제출기한



(4) 구비서류

- 임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호서식)

(5) 대상자 선정

1) 선정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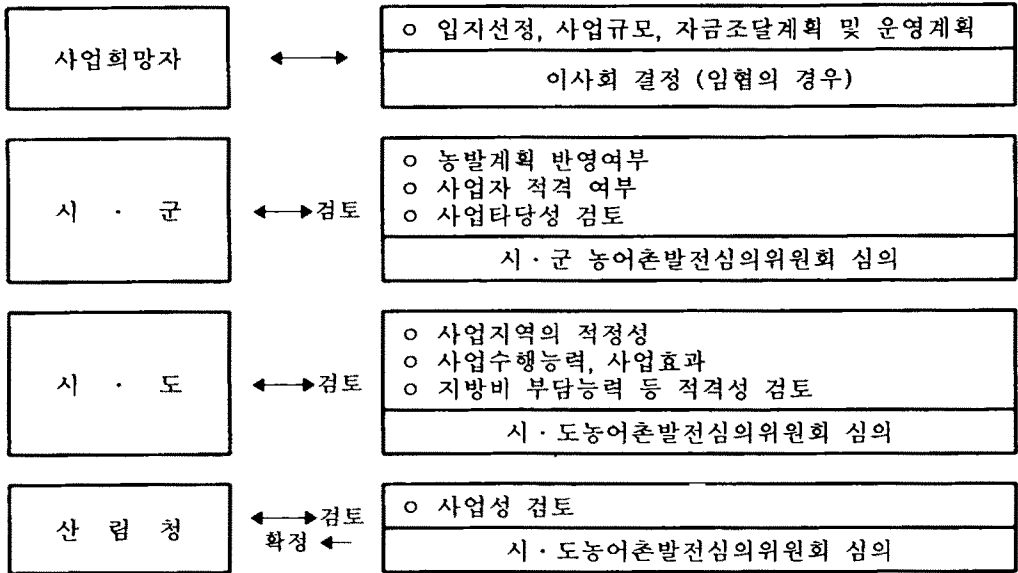
- 임산물직매장
 - 임산물이 다량 생산되거나 수집·판매·알선 또는 소비촉진이 용이한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 지역의 임산물 생산자 조직

- 목재종합집하장
 - 목재유통의 거점지역으로 목재 보속생산이 가능하고 집하가 용이하며 목재 소비지와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목재관련 생산자 조직
- 임산물 공판시설
 - 밤·표고 등 단기소득임산물이 다량 생산되거나 수집등이 용이한 시·군 지역의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조직

2) 선정기준

- 임산물 직매장 및 목재종합집하장
 - 사업계획의 타당성 분석 결과(원료확보방안, 시설운영 및 판매계획 등) 보조 목적달성이 가능한 자로서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우선순위
 - ① 국고보조로 임산물직매장 또는 목재종합집하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내의 임업협동조합으로서 부지를 기 확보하였거나 사업시행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자
 - ② 국고보조로 임산물직매장 또는 목재종합집하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내의 임업협동조합 이외의 임산물 생산자조직으로서 부지를 기 확보하였거나 사업시행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자
 - ③ 기타지역의 임산물 생산자 조직으로서 부지를 기 확보하였거나 사업시행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자
- 임산물 공판시설
 - 사업계획의 타당성 분석결과(원료확보 방안, 시설운영 및 판매계획 등) 보조목적 달성이 가능한 자로서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우선순위
 - ① 주산단지가 있는 시·군(표고의 경우 재배단지가 유치된 시·군 포함) 중 지역내 공판시설이 없는 지역 임업협동조합
 - ② 주산단지가 있는 시·군(표고의 경우 재배단지가 유치된 시·군 포함)중 공판시설이 없는 지역내의 임업협동조합 이외의 임산물 생산자 조직
 - ③ 기타 시·군 중 지역내 공판시설이 없는 지역 임업협동조합
 - ④ 기타 시·군중 공판시설이 없는 지역내의 임업협동조합 이외의 임산물 생산자 조직
 - ⑤ 기타 지역의 임산물 생산자 조직

3) 선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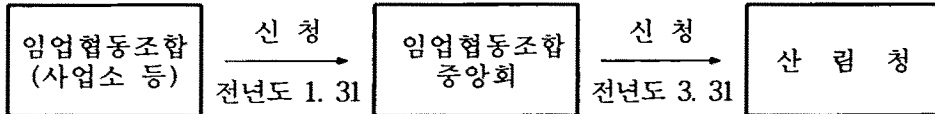


나. 농림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설치사업

- '99년 이후 계속사업으로 수행, 신규대상자 선정계획 없음

다. 유통·가공지원사업

- (1) 신청서 제출기관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 (2) 신청자격 :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
- (3) 신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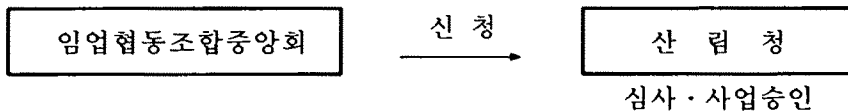


(4)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필요성, 타당성, 경제성, 사업효과, 운영방안 등)
 - 직거래판매사업의 경우 직거래 원료구입 품목 및 수량 등을 명시할 것

(5) 대상자 선정

- 선정대상자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 선정절차



라. 우수임산물 수출촉진사업

(1) 신청서 제출기관

- 우수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수출원자재 구매지원사업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
- 우수임산물 시장개척사업 :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2) 신청자격

- 과거 임산물 과거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3) 구비서류

- 우수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 우수임산물 해외개척사업 지원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 수출원자재 구매지원사업 지원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임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 계획서

1. 사업명
2. 사업목적
3. 사업대상자
4. 세부사업계획

가. 부지확보계획

○ 위치 : 도(시) 시(군·구) 구(읍·면) 동(리) 번지
[위치약도(1/5,000축척지형도)첨부]

○ 부지면적 : (소유자명 :)

○ 지 목 :

- * 위치선정 사유(주변현황 등) :
- * 토지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
- * 미확보시는 사업시행시점까지 확보계획(추진일정) :

나. 시설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규 모 (m ²)	단가 (천원/m ²)	총사업비	재원조달계획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 임산물직매장 - 창고 및 부대시설 - 판매장 - 전시장							
○ 목재집하장 - 시설부지 - 관리자 - 기계장비							
○ 임산물공판장 - 시설부지 - 공판시설 - 부대시설							

- ※ 재원조달계획중 자부담분에 대하여는 적립금 예치등 증빙자료 첨부
- ※ 건물평면도(1/300) 첨부

다. 추진일정

- 부지확보 완료 :
- 기초 및 실시설계 완료 :
- 착공 및 준공 :

5. 주요 품목별 생산량 및 유통량(과거 5개년)

(단위 : 톤)

구 분						
품 목 명	생 산 량					
	유통 량					

6. 취급예정물량 및 금액

(단위 : 톤, 백만원)

품 목	1 일 평 균		연 평 균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7. 연차별 수지전망(손익추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년 도					
	수 익					
비 용						
순 손 익						

【별지 제2호서식】

자체 가49-1

임산물유통시설 공사추진 상황보고

시설명 :

설치장소 : (부지 : m²)

'99 시설계획

구분	시설규모	사업비 부담내역					비고
		계	국고	국고융자	지방비	자담	
계							
○ 임산물 직매장 - 창고 및 부대시설 - 판매장 - 전시장							
○ 목재종합집하장 - 시설부지 - 관리사 - 기계장비							
○ 임산물공판장 - 시설부지 - 공판시설 - 부대시설							

※ 임산물직매장, 목재종합집하장 중 해당되는 사항만 기입

시설공사 추진상황(○/○분기)

○ 공사진도 : %

○ 일정별 추진상황

- 설계 완료 :

- 건축허가 취득 :

- 공사착공 :

- 기초터파기 공사중 :

※ ()내는 추진일자를 기입

분기별 예산집행상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1/4		2/4		3/4		4/4	
			%		%		%		%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별지 제3호서식】

총 공통 - 9

()사업 정산실적 보고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획				집행실적(정산)				대 비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	국고 보조 (C)	읍자 (D)	지방 비	자부 담	계	국고 보조 (E)	읍자 (F)	지방 비	자부 담	E/C	F/D	착공 일	준공 일

【별지 제4호서식】

자체 가49-2

임산물유통시설 운영실적 보고

I. 운영실적 총괄

- 유통시설별 사업별 판매금액, 조수입 등 운영실적

(단위 : 백만원)

유통시설별	설치장소	사업별	'97 실적		'98 실적		대비(%)	
			판매금액	조수입	판매금액	조수입	판매금액	조수입

II. 운영실태 분석평가

III. 운영상 문제점 및 건의사항

IV. 운영활성화를 위한 향후 추진대책

우수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

회사의 종류	주식회사, 합자, 합명, 유한, 조합, 개인			설립일자	
업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FAX번호	
주요 경영진 경력사항(2~3인)	성명	직위	생년월일	학력	주요경력

우수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에 따라 임산물에 대한 ()년도 수출활성화사업 지원대상업체로 지정 받고자 붙임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1999.

신청인 :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 붙임 1.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별표1양식)
2. 우수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별표2양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과거 2개년도 수출실적 증명서(외국환 은행장 발행)
5. 수출신용장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 귀하

우수임산물 해외개척사업 지원신청서

회사의 종류	주식회사, 합자, 합명, 유한, 조합, 개인			설립일자	
업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FAX번호	
주요경영진 경력사항 (2~3인)	성명	직위	생년월일	학력	주요경력

우수임산물 해외개척사업에 따라 임산물에 대한 ()년도 해외개척사업 지원대상업체로 지정 받고자 붙임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1999. . . .

신청인 : 주소
 상 호
 신청인 (인)

- 붙임 : 1.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별표 1 양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과거 2개년도 수출실적 증명서(외국환 은행장 발행)
 4. 수출신용장
 2.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이 정한 세부사업별 신청서 1부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수출원자재 구매지원 지원신청서

회사의 종류	주식회사, 합자, 합명, 유한, 조합, 개인			설립일자	
업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FAX번호	
주요 경영진 경력사항 (2~3인)	성명	직위	생년월일	학력	주요경력

수출원자재 구매지원사업에 따라 임산물에 대한 ()년도 수출원자재 구매 지원대상업체로 지정 받고자 붙임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1999. . .

신청인 : 주소
상 호
신청인

(인)

- 붙임 : 1.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별표1양식)
2. 수출원자재 구매지원사업 지원신청서(별표3양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과거 2개년도 수출실적 증명서(외국환 은행장 발행)
5. 수출신용장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 귀하

[별표 1]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1. 과거 2개년도 수출실적

(단위 : 톤, 천\$)

품목 (HS번호)	수출실적		분기별 수출물량				수출국
	물량	금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2. 금년도 수출계획

(단위 : 톤, 천\$)

품목 (HS번호)	수출실적		분기별 수출계획물량				수출국
	물량	금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3. 수출신용장 수취현황

(단위 : 톤, 천\$)

품목 (HS번호)	신용장 내용			수출국
	수출물량	수출금액	선적기한	

[별표 2]

우수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99. 분기)

1. 신청인 현황

업체명		대표		전화		FAX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 우수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지원 신청내역

- 포장·운송비

품목 (HS번호)	수출실적		수출기간	포장운송비				신청액
	수량	금액		포장재	운송비	선별비	계	

- 포장디자인 개발

포장디자인 개발희망 품목	중량	포장형태	주수출지역	포장표기언어	비고

- 밤 선별기, 외피박피기 구입

주요 수집지역	밤 선별기		밤 외피박피기		비고
	연간 선별수량	지원요청 대수	연간 박피수량	지원요청대수	

위와 같이 우수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1999. . .

신청인 : 주 소

신청인

(인)

붙임 : 1. 수출면장(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사본 1부.

2. 포장재 제작 사양서 1부.

[별표 3]

수출원자재 구매지원사업 지원신청서('99. 분기)

1. 신청인 현황

업체명		대표		전화		FAX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 수출원자재 구매지원사업 지원 신청내역

(단위 : m³, 백만원)

사업량	단 가	총사업비			사업소재지
		계	용자	자담	

위와 같이 수출원자재 구매지원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1999. . . .

신청인 : 주 소

신청인

(인)

- 붙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임산물유통과(과장 남성현, 임업 사무관 고기연)입니다.

1. 목 적

- 노후된 합판 또는 보드류시설 교체를 통한 생산성 향상
- 국산재 이용확대로 산주 소득증대 및 관련산업 육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 남양재 활엽수 위주의 합판 생산시설을 침엽수 병용 생산시설로 교체
- 보드류 생산시설의 현대화로 폐목재 재활용 및 국산 소경·간벌재 이용률 제고

3. 근거법령

- 임업진흥촉진법 제10조제1항(임산물가공업의 지원)
- 산림법 제109조제1항(자금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6년	'97년	'98년	'99년 (예산안)	2000년	2001-2004	
사 업 량	12	4	4	2	2	8	
사 업 비	계	46,814	14,286	10,714	8,572	14,286	57,144
	용 자	32,770	10,000	7,500	6,000	10,000	40,000
	자부담	14,044	4,286	3,214	2,572	4,286	17,144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자

- 합판 생산시설을 보유한 업체 중 침엽수 합판 생산시설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노후시설을 침엽수 등 합판 생산시설로 교체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소요액의 30%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자와
-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노후시설을 교체·증설하고자 하는 자로서 소요액의 30%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자

(2) 지원조건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70% 융자(국고융자 70%, 자부담 30%)
- 융자한도액 : 업체당 시설금액의 70%이내
- 융자금리 : 연리 9.5%
- 융자기간 : 10년(3년거치 7년상환)

나. '99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단 비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합 계	예산액(재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용 자		
합판 및 보드류 시설	2개소	4,286	8,572	6,000	6,000	-	2,572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임업정책국 임산물유통과 (042-481-4137~8)

다. 자금지원 예정자 : 지원대상자격을 가진 합판 또는 보드류 생산업체로서 한국합판공업협회장을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지원 신청한 업체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업자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한국합판공업협회장 : 본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감독
- 한국산업은행 : 융자금이 사업계획에 부합하게 적정 사용되었는지 여부 확인

나. 집행실적 제출

- 한국합판공업협회장은 융자금 집행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자격 : '99년도 사업시행요령 지원대상자와 같음

나. 신청절차

- 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예정연도의 전년도 2월 28일까지 한국합판공업협회장에게 제출
- 한국합판공업협회장은 각 사업자의 사업계획서를 취합, 의견을 첨부 하여 사업예정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

다.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별첨1) 1부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별첨2) 1부
 - 2. 대출신청자료(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1부

【별첨2】

사 업 계 획 서

<사업계획서에 포함 작성할 내용> - - - - - 관련자료는 첨부

1. 시설계획 개요(설치위치, 1일 및 연간생산능력, 원자재별 사용량, 가동예정일)

2. 생산시설 현황

3. 사업운영 실적

- 연도별 합판 및 보드류 생산실적
-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4. 시설 설치계획(지원희망 시설만 기재)

생산공정명	기계명	규격	제조회사	수량	금 액			비 고
					계	응 자	자부담	

- 기계이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기계명”란에 “시설명”을 “수량”란에 “시설 면적”을 기재
- “비고”란에는 교체, 신설, 증설여부를 기재
- ※ 동 내역은 은행에 통보되어 대출시 확인하는 사항이므로 정확히 기재

5. 월별 자금투자 계획

6. 일정별 사업추진 계획

7. 시설설치시 투자효과 분석

8. 법인개요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정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여 백

Ⅲ. 인 력 육 성



여 백

80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육성(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기술지원과(과장 김형광, 임업사무관 조동하)입니다.

1. 목 적

-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지원을 통해 지역사유림 경영을 선도하는 임업인으로 육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의 지속적인 선발
- 소유산림의 자율적 경영을 위한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 임업경영실적의 철저한 사후관리

3. 근거법령

임업진흥촉진법 제13조(임업후계자등의 육성), 동법시행령 제10조(독립가 지원), 동법시행규칙 제13조(임업후계자의 요건 및 지원 등)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92-'96년	'97년	'98년	'99년 (예산안)	2000년	2001-2004
사업량	계	388명	97명	200명	230명	230명	1,150명
	독립가	162	39	100	100	100	500
	임업후계자	226	58	100	130	130	650
사업비	계(백만원)	13,297	4,700	10,000	10,900	10,900	48,600
	독립가	6,218	2,700	5,000	5,000	5,000	25,000
	임업후계자	7,079	2,000	5,000	5,900	5,900	23,600
	보조	-	-	-	-	-	-
	융자	13,297	4,700	10,000	10,900	10,900	43,600
	지방비	-	-	-	-	-	-
자부담	-	-	-	-	-	-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 경

사유림경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핵심주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를 독립가로 인정하고 젊고 유능한 전문 임업후계자를 선발하여 지원함으로써 사유림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함

(2) 자금지원대상자

임업진흥촉진법제13조 및 임업후계자선발·독립가인정절차및관리에관한규정 제2조,제5조에 따라 임업후계자, 독립가로 인정된 자

(3) 지원조건

- 용자한도액 : 독립가는 3억원
임업후계자는 2억원
- 용자조건 : 연 3%, 5년거치 10년상환
- 지원비율
 - 임업진흥기금 : 용자 100%
 - 농특회계 : 용자 100%

(4) 지원내용

-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기자재구입비, 임야매입자금 등

나. '99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백만원)	예산액(농특회계,임업진흥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계	230	10,900	10,900	-	10,900	-	-
-임업진흥기금	200	10,000	10,000	-	10,000	-	-
· 독립가	100	5,000	5,000	-	5,000	-	-
· 임업후계자	100	5,000	5,000	-	5,000	-	-
-농특회계	30	900	900	-	900	-	-
· 임업후계자	30	900	900	-	900	-	-

※용자조건

- 임업진흥기금 : 연 3%, 5년거치 10년상환
- 농특회계 : 연 6.5%, 3년거치 7년상환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나. 사업담당부서

- 중앙 : 산림청 자원조성국 기술지원과(042-481-4190~6)
임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지원부(02-416-9419~20)
- 시·도 : 산림과
임업협동조합중앙회 각 도지회
- 시·군 : 산림과(녹지과), 임업협동조합

다. 자금지원대상자

- 임업진흥촉진법제13조 및 임업후계자선발·독립가인정절차및관리에관한규정 제2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임업후계자·독립가로 인정된 자
- 독립가는 한국독립가협회장, 임업후계자는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의 추천을 받은자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계획 작성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농특회계는 시장·군수 임업진흥기금은 관할 임업협동조합에게 제출
 - 사업계획 및 변경승인권자
 - 농특회계 : 시장·군수
 - 임업진흥기금 : 임업협동조합장
- 사업비집행방법
 - 농특회계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임업협동조합 및 신청자에 통보
 - 임업진흥기금
 - 임업협동조합장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청자에 통보
 - 대출금은 지원대상자가 관할 임업협동조합에 대출 신청
 - 임업협동조합장은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및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
- 추진일정
 - 자금신청 : 1월 ~ 12월
 - 자금대출 : 1월 ~ 12월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임업협동조합장은 융자금의 사용실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융자금의 부당 사용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융자금 회수
- 융자받은 자는 융자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물자등을 보관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지원사항 등을 임업후계자·독립가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도·감독
- 임업협동조합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목적이외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
- 시장·군수는 관할 시·군 임업협동조합장과 협조하여 독립가 및 임업 후계자에게 정부산림 시책홍보와 산림경영 기술지도를 담당하도록 함

나. 보고·기타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대출금 집행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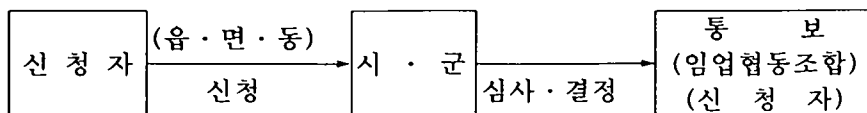
- 농특회계 : 시·군
- 임업진흥기금 : 임업협동조합

나.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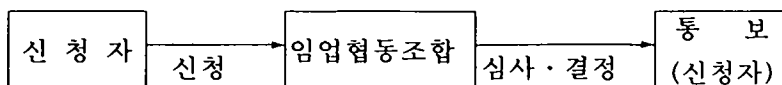
- 임업진흥촉진법 제13조 및 임업후계자선발·독립가인정절차및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임업후계자·독립가로 인정된 자가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기자재구입비, 임야매입자금 등

다. 신청절차

○ 농특회계



○ 임업진흥기금



[별지 제1호서식]

임업진흥기금융자 신청서

사업명	세부사업명	단위	사업량	총사업비(천원)				사업소재지
				계	용자	자담	보조	

199

○ 신청인 주소 :

상호(법인명) :

전화

성명(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첨부서류

가. 소유권확인서 1부

나. 사업계획서(시설공사에 한함) 1부

다. 차주 및 보증인 인감증명서(자금대출시) 각 1부

라. 기타 필요한 서류

○○임업협동조합장 귀하

I. 임업전문인력 양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경영과(과장 김현식, 임업사무관 김용관)입니다.

1. 목 적

- 농산촌 인력난에 따른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확보
- 산림작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문임업기능인 양성
- 임업기능인영림단 운영으로 임업의 산업화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임업기능인 훈련 및 영림단 장비지원
 - 임업경영에 관한 기본이론 및 현장 산림사업기술 훈련
 - 임업기계화를 위한 임업기계장비의 조작·정비훈련
 - 국가기술자격(영림기능사)을 갖춘 전문임업인으로 육성 보조지원
 - 목구조기술훈련 및 산림내 소득작물훈련으로 농외소득증대
 - 임업기계훈련원 교육장비 보강 및 산림작업관리자 교육확대

3. 근거법령

- 임업진흥촉진법 제14조(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임업의 기계화)
- 임업진흥촉진법시행령 제11조(임업기능인 양성등)
- 임업진흥촉진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기금의 용도)

4. 연도별 지원계획

○ 전문인력 양성

(단위:백만원)

구 분		'92~'96년	'97년	'98년	'99년 (예산안)	2000년	2001-2004
사업량		3개소	3개소	3개소	3개소	3개소	3개소
사업비	계	3,948	1,163	1,125	1,425	1,882	7,528
	보 조	3,948	1,163	1,125	1,425	1,882	7,528

○ 영림단 장비지원

(단위: 백만원)

구분		'92-'96년	'97년	'98년	'99년 (예산안)	2000년	2001-2004
사업량		143단 (1,716명)	30단 (360명)	30단 (360명)	30단 (360명)	40단 (480명)	160단 (1,920명)
사업비	계	3,056	566	566	566	1,110	4,439
	보 조	3,056	566	566	566	1,110	4,439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전문인력 양성

가. 사업내용

○ 추진 배경

우리 나라 산림은 녹화기를 지나 육림 및 경영단계에 도달함으로써 과거 단순녹화위주의 임업노동에서 질적수준이 높은 기술임업노동으로 전환됨에 따라 양질의 기술인력이 필요하며, 농산촌 인구의 노령화, 부녀화 및 공동화로 임업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아니라 임업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기계를 조작·운용하는 전문기능인이 필요함에 따라 임업기능인 양성을 위한 훈련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지원내용

- 임업기능인 훈련사업비 지원(영림단의 신규 및 보수훈련)
- 임업훈련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임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속 3개 임업기능인훈련원(강릉임업기계훈련원, 양산 임업기술훈련원, 진안임업기능인훈련원)

○ 지원조건: 국고보조

영림단 장비지원

가. 사업내용

- 배경 : 농산촌 인력난에 대처하고 안정적인 임업노동력 확보
- 사업시행주체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시·군 임업협동조합
- 지원대상자 : 신규 영림단

○ 사업내용

- 임업기능인으로 조직된 영림단에게 사업실행시 필요한 기본장비 구입비 지원

- 사업량 : ('97) 343단 4,040명 → (2010) 763단 9,150명

※ '98 신규조직 : 30단 360명

- 장비지원내용 : 1단당 12명 기준

기계종	풀삭기	고지절단기	천공기	원 치	차량	무전기	무육도구	안전장비
6대	4대	4대	4대	1대	1대	3대	12조	12조

나. '99년 사업비(예산안) 내용

□ 전문인력 양성

(단위: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예산액(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소계	보조	융자		
계		3개소	1,425	1,425	1,425	-	-	-
강 령 훈련원	소 계		1,115	1,115	1,115	-	-	-
	인 건 비	32인	341	341	341	-	-	-
	경상비및훈련사업비		448	448	448	-	-	-
	교육장비구입		326	326	326	-	-	-
양산· 진안임업 훈련원	소 계		310	310	310	-	-	-
	인 건 비	10인	87	87	87	-	-	-
	경상비및훈련사업비		212	212	212	-	-	-
	접차구입(양산)	1대	11	11	11	-	-	-

□ 영림단 장비지원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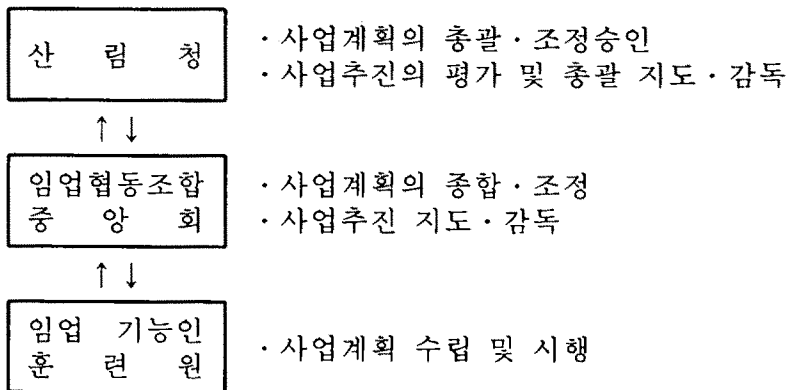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융자	보조		
계	30단 (360명)	566	566	-	566	-	
민유림 영림단 증 설	30단 (360명)	566	566	-	566	-	

<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 사업담당부서 : 산림경영국 산림경영과 (042-481-4209)

다. 사업시행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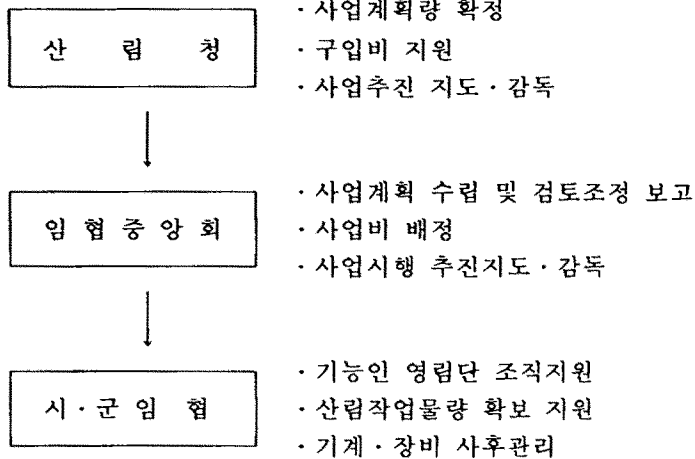
□ 전문인력 양성



□ 영림단 장비지원

-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사업수행주체 : 시·군 임업협동조합

- 사업 추진



- 지원형태 및 수준

- 지원형태 : 국고보조
- 기 준 : 국고 100%

라. 사업시행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각 임업훈련원의 '99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98. 11. 3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8조)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사업비 지원방법

훈련사업비 지원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임업협동조합 중앙회장에게 보조금으로 교부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각 임업기능인훈련원의 훈련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각 임업기능인훈련원은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영림단교육훈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은 「물품관리법」에 준하여 관리함

나. 보 고

- 보조금 정산보고(총공통-9)

II. 임도시공장비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토목과(과장 허경태, 임업사무관이철수)입니다.

1. 목 적

임도시설 등 산림토목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시·군임협 및 산림개발사업단에 임도시공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임업생산성 향상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산림사업의 전문화와 기계화를 통한 임업생산성 향상
- 견고한 임도시공으로 산림재해예방 및 활용도 제고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10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의2(자금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92-'96년	'97년	'98년	'99년 (예산안)	2000년	2001-2004
사 업 량		38	47	18	16	16	30
사 업 비	계	2,796	2,796	1,468	1,404	1,404	2,633
	보 조 용 자	2,796	2,796	1,404	1,404	1,404	2,633
	지방비	-	-	-	-	-	-
	자부담	-	-	64	-	-	-

5. '99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지원 배경
 - 산림사업의 원활을 기하고 임업경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산림토목 사업에 필요한 임도시공장비를 지원
- 지원대상자
 - 시·군임협 및 임협중앙회 산림개발사업단
- 지원규모
 - 산림토목사업에 필요한 임도시공장비(굴삭기)를 1대씩 연차적으로 지원
 - 시·군임협조합 총 141대 지원(1/조합당)
 - 산림개발사업단 총 24대 지원
- 지원조건
 - 전액국고보조로 지원

나. '99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단위 : 대,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16	1,404	1,404	1,404	-	-	-
임도시공 장비지원	16	1,404	1,404	1,404	-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나. 사업담당부서

- 산 립 청 : 자원조성국 산림토목과 (042-481-4185-7)
- 임협중앙회 : 개발부(02-416-9418)

다. 자금지원 대상자

○ 지원대상자

- 민유임도를 시공하는 시·군 임업협동조합(서울·울릉조합 제외)
- 국유임도를 시공하는 임협중앙회 산림개발사업단

○ 선정기준

- 임도시공 실적이 많거나 임도시공 대상지가 많은 조합·산림개발사업단
- 중기운전기사를 보유하고 있거나 확보 가능한 조합
- 자립기반이 취약하여 임도시공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조합

○ 선정방법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이 시급한 조합을 선정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 1월 : 장비지원계획 수립
- 2~3월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4~6월 : 장비구입 현지배치 완료
- 7~12월 : 사업실행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실행 등에 따라 변경요인 발생시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 실행

○ 사업비 지원방법(실행체계)

- 산 립 청 :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신청한 사업량을 검토, 예산청에 예산 신청하여 소요예산 확보
 - 확보된 예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시달
- 임협중앙회 : - 익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 신청
 - 산림청 사업지시에 따라 장비구입 배정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o 장비운영·관리실태 지도감독
- o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임도시공장비 (굴삭기)	구입년도	6년	임협중앙회 회계규정 및 법인세법	

나. 보고·기타

- o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고사항(총공통-9)

여 백

IV. 환 경 임 업 육 성



여 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지계획과(과장 박주린, 임업사무관 최준석)입니다

1. 목 적

-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휴식공간 조성제공 및 농산촌 지역사회 소득증대 도모
- 지역향토수종 등 가치있는 유전자원과 산림사료의 영구적 보존·전시 및 학술연구를 통한 산림문화의 창달과 대국민 자연학습장 제공

2. 추진방향

- 산림휴양수요와 이용패턴에 맞는 다양한 휴양공간 조성
- 자연보전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 휴양시설의 산림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강화
- 입지여건을 고려한 지역별 휴양공간의 특색화

3. 근거법령

- 자연휴양림 조성
 - 산림법 제31조 ~ 제33조
 - 자연휴양림 조성·관리운영요령(산림청예규 제474호)
- 산림박물관 및 수목원 조성
 - 산림법 제34조 ~ 제34조의2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6년	'97년	'98년	'99년 (예산안)	2000년	2001-2004	
사업량	71	12	38	46	30	107	
사업비	계	81,494	23,208	21,301	24,233	22,653	94,396
	보조	34,143	11,440	10,945	11,383	11,172	46,163
	융자	13,230	1,260	-	1,680	1,260	5,040
	지방비	29,649	9,968	9,790	10,450	9,681	41,033
	자부담	4,472	540	566	720	540	2,160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배 경

- 자연휴양림

국민휴양수요 충족을 위하여 산림내 편의시설설치 휴식공간 조성

- 박물관·수목원

향토수종 및 산림사료의 영구적 보전전시 등을 통하여 산림문화창달과 대국민 자연학습장 제공

○ 지원대상자 선정

- 사유림 자연휴양림(융자)

지정·고시된 사유림중 시·도지사로부터 휴양림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

- 공유림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보조)

시·도지사가 선정

- 박물관·수목원 (보조)

도별 또는 지역별로 시·도지사가 추진

○ 지원단가 및 조건

- 자연휴양림

신규 : 개소당 12억원을 2~3년간 분할지원(국고보조 70%, 지방비 30%)

보완 : 개소당 4억원을 당해년도에 지원(국고보조 50%, 지방비 50%)

용자 : 12억원을 기준 70%까지 지원(3년거치 7년상환 연리 6.5%)

- 산림욕장

신규 : 개소당 4억원을 1~2년간 분할지원(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박물관·수목원

박물관 : 총 80억 규모로 4년계획으로 지원(국고 50%, 지방비 50%)

수목원 : 총 30억 규모로 4년계획으로 지원(국고 50%, 지방비 50%)

○ 시설종류

- 자연휴양림 : 산책로, 야영장, 등산로, 숲속의집, 취사장, 화장실 등

- 산림박물관 : 박물관, 내부전시물 및 각종 부대시설 등

- 지방수목원 : 전시원, 온실, 교육동, 관리사, 관찰로 등

나. '99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금액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일반, 농특)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계	46	24,233	13,063	11,383	1,680	10,450	720
· 자연휴양림 조성	24	8,733	5,313	3,633	1,680	2,700	720
- 설 계	3	133	93	93	-	40	-
- 조 성	7	2,200	1,540	1,540	-	660	-
- 보 완	10	4,000	2,000	2,000	-	2,000	-
- 용 자	4	2,400	1,680	-	1,680	-	720
· 산 림 욕 장	15	4,000	2,000	2,000	-	2,000	-
· 산 림 박물관	4	8,000	4,000	4,000	-	4,000	-
· 지 방 수 목 원	3	3,500	1,750	1,750	-	1,750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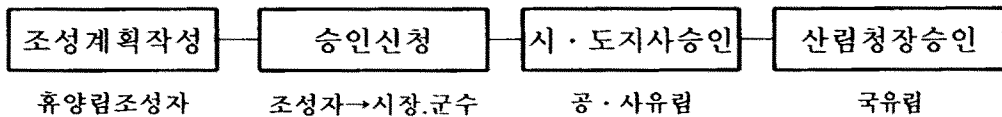
-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 시·도, 시·군
- 박물관·수목원 : 시·도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경영국 산지계획과 [(042) 481 - 4217~4219]
- 시·도 : 농정국 산림과(산지이용과)
- 시·군 : 산림과(녹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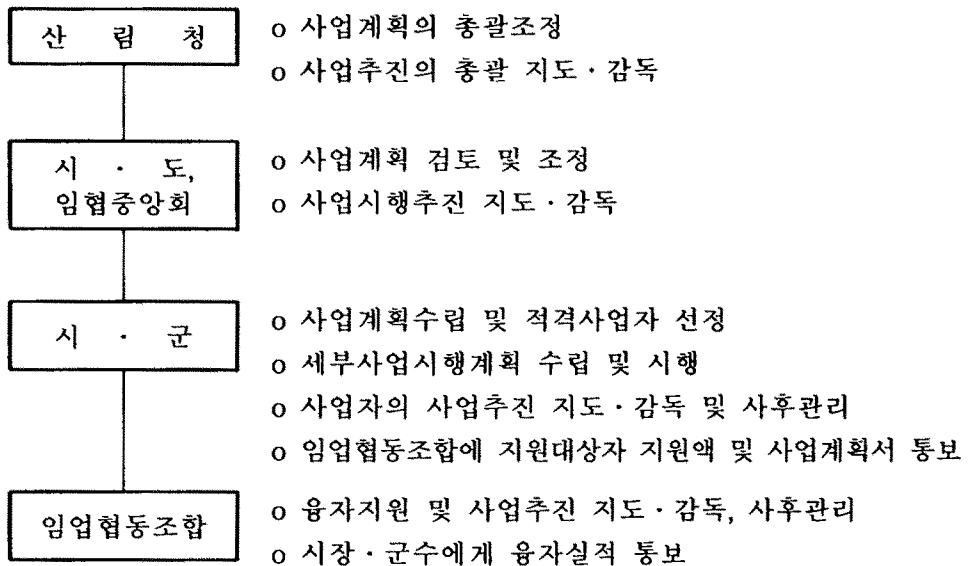
다.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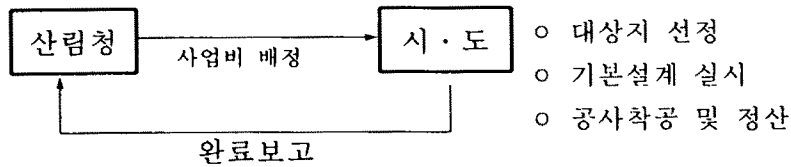


- 사업비 집행방법

- 사유림 자연휴양림(음자)



○ 산림박물관 및 지방수목원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1) 사후관리 책임자 : 시·도지사, 시장·군수, 관할 임업협동조합장

(2) 사후관리철저

- 조성시설 추진상황 점검
- 시설운영 여부 확인

나. 보고·기타

- 국고보조금 정산실적보고 (총공통-9)

6. 2000년도 사업대상지 선정 및 신청절차

(1) 사업대상지 선정

○ 자연휴양림

<신규조성>

-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으로 지정·고시된 산림으로서 배후도시의 휴양수요, 인근 산촌마을 소득향상, 기타 지역 개발사업과의 연계 등을 고려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

<보완사업>

-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 휴양만족도 향상, 휴양림 특색화, 운영프로그램 구축 등이 필요한 기존의 시설지 중에서 선정

○ 사유림 자연휴양림

- 휴양림으로 지정·고시된 사유림중 시·도지사로부터 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 받은 자로서 자부담 및 담보능력 유무에 따라 선정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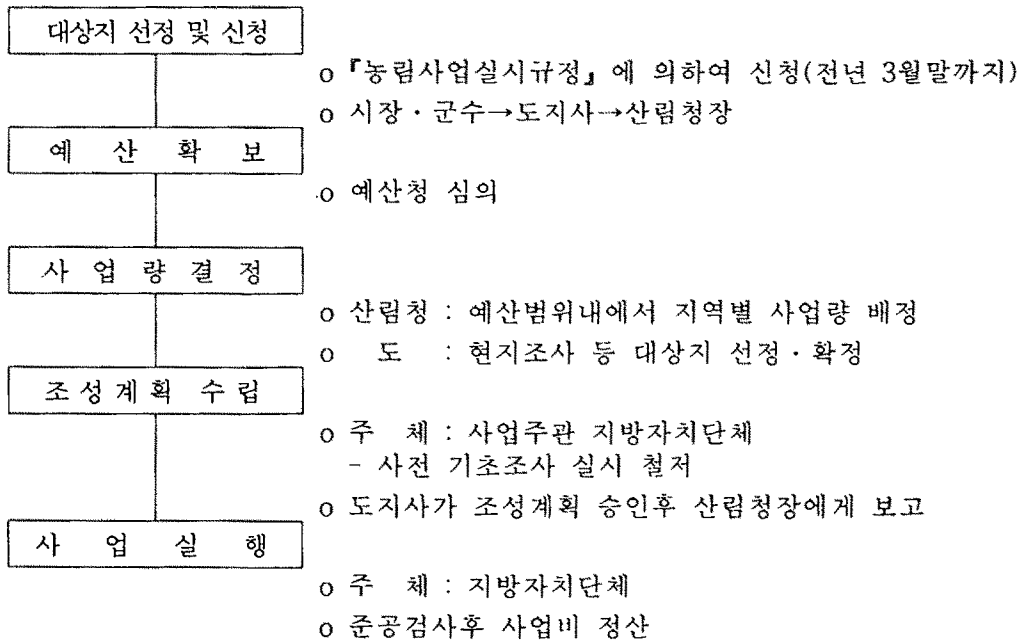
○ 삼림욕장

- 도시근교에 위치하여 당일 방문이 가능한 10ha이상의 공유림으로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던 곳

○ 수목원·박물관

- 시·도별, 권역별로 1개소씩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향토특색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지역을 선정

(2) 신청절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토목과(과장 허경태, 임업사무관 김동권)입니다.

1. 목 적

황폐지(산지·해안·계천)를 복구녹화하여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재해 예방과 수원함양·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지역완결원칙에 의한 계통사방 실시(산정 → 산복 → 댐 → 야계)
- 5대강유역·임업진흥권역에 우선 실시
- 적지적공법에 의한 완벽한 복구

3. 근거법령

- 사방사업법 제5조(사방사업은 이를 국가의 사업으로 한다)
 - 사방사업은 특정개인에게 보조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토보전 및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국가에서 실행하는 사업임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6년	'97년	'98년	'99년 (예산안)	2000년	2001-2004
사 업 량	산 지 사 방(ha)	1,347	137	110	100	130	320
	예 방 사 방(ha)	206	21	20	20	50	200
	해 안 사 방(ha)	51	10	-	3	2	7
	야 계 사 방(km)	611	71	60	45	210	880
	수질정화시설(개소)	-	3	3	3	20	97
	사 방 댐(개소)	294	93	70	56	200	840
	마을환경사방(마을)	-	3	3	-	20	80
	사 업 비	계	96,463	26,713	24,186	21,822	76,855
	국 고	67,913	19,258	16,896	15,385	53,799	220,268
	지 방 비	28,550	7,455	7,290	6,437	23,056	94,401

※ 2000년 이후 사업계획은 「제4차산림기본계획」 기준임

5. '99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사업의 종류>

○ 산지사방

- 자연황폐지·산사태발생지 등에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공작물을 시설하고, 지피식생조성을 위해 풀씨를 뿌리고 나무를 식재하는 공사임

○ 예방사방

- 주택가·산업시설주변등 산사태가 발생하면 인명·재산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임

○ 해안사방(해안침식지 복구)

- 해안모래언덕의 이동 및 모래날림방지를 위한 울타리시설과 나무를 식재하는 공사임
- 해안침식지 복구는 해안의 모래언덕 기타 산림이 파도에 침식되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도막이 및 침식방지 시설을 하는 공사임

○ 야계사방

- 산간 황폐계곡의 산기슭을 고정하고 물의 흐름을 완화시켜 계상의 침식방지 및 계류를 정비하는 공사임

○ 사방댐

- 황폐계천의 토사·자갈이 하류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거나 계곡에 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횡공작물을 설치하는 공사임
- ※ 저사·저수를 겸하도록 시공하여 산불진화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

<지원 조건>

-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나. '99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백만원 21,822	15,385	15,385	-	6,437	-
산 지 사 방	100ha	4,130	3,000	3,000	-	1,130	-
예 방 사 방	20ha	1,076	753	753	-	323	-
해 안 사 방	3km	868	668	668	-	286	-
야 계 사 방	45km	5,731	4,012	4,012	-	1,719	-
수질정화시설	3개소	306	214	214	-	92	-
사 방 댐	56개소	9,625	6,738	6,738	-	2,887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

나. 사업담당부서

- o 산림청 : 자원조성국 산림토목과(042-481-4181)
- o 시·도 : 농정국 산림과(특·광역시 녹지과, 제주도 산림환경과)
- o 산림환경연구소 : 사방사업과

다. 자금지원 대상자

- o 선정기준
 - 황폐산지·계천 또는 해안침식지 등을 대상으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하여 농경지·산업시설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국토·경관보전에 저해가 되는 곳에 시공
 - 개인 또는 공공단체에서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기소유 토지안에서 자력으로 사방사업을 실행할 수 있음

○ 우선순위

- ① 산림이 황폐되어 토사가 유출되고 있는 곳
- ② 가옥·산업시설·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
- ③ 농경지 등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
- ④ 자연경관보전에 저해되는 곳 등

○ 선정절차

- 산림환경연구소(특·광역시 녹지과, 제주도 산림환경과)에서 사방사업 대상지의 일괄 조사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실행함
- 그러나 지역주민이 각급행정기관을 통하여 사방사업 실행을 건의하면 타당성을 검토·실행할 수 있음

라. 사업시행

○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 사업시행계획
 - 11~12월중순 : 익년도 사업예정지 선정
 - 1~2월 : 사업실행설계서 작성
 - 3~6월 : 춘기사업 실행
 - 9~12월 : 추기사업 실행
- 계획변경
 - 사업대상지 선정 및 사업실행중 설계내용이 불합리할 때에는 시·도 지사가 변경 실행

○ 사업비 자원방법(사업실행 체계)

- 산림청 :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사업량을 검토하여 예산청에 예산 신청, 국고소요 예산 확보 및 시·도에 사업계획 시달
- 시·도 : - 익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신청
 - 산림청으로부터 배정받은 사업량에 대한 지방비 확보 및 산림환경연구소에 사업 지시
- 산림환경연구소 : - 익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신청
 - (특·광역시녹지과, - 사업실행 예정지선정 및 사업설계·실행
 - 제주도 산림환경과)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방사업을 실행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후관리함이 원칙
 - 필요할 경우 산주 또는 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되, 이 경우 사후관리비는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부담

나. 보고·기타

- 사업설계 및 실행상황(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보고사항(총공통-9)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환경과(과장 김용하, 임업서기관 조정웅)입니다.

1. 목 적

- 산림지역의 산성비 실태를 파악하고 임업적 대처방안 개발
- 산림내 주요 자생식물 서식지 보호관리 강화
- 야생조수 서식지보호를 통한 자연생태계 균형유지
- 펄 가공이용도를 증대시켜 사육농가 소득증대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산성비 모니터링체계 강화 및 피해지역 회복실연사업 추진
- 야생조수실태조사 및 조수보호구설정 확대와 서식환경개선사업의 추진
- 보호대상식물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천연보호림으로 지정하고 노거수등의 보호·관리 강화
- 전국 4개권역별로 각5개소씩 총 20개소의 펄가공공장 설치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산림기본계획), 동시행규칙 제3조의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검토기준), 제51조제1항(천연보호림 등의 기준)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3조, 제6조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 제1호

4. 연도별 지원계획

(사업비 : 백만원)

구분	'92-'96년	'97년	'98년	'99년 (예산안)	2000년	2001-2004	
사업량							
- 산성비모니터링	65	65	65	65	65	260	
- 조수서식실태조사	90	27	27	27	36	144	
- 서식환경조성	20	4	2	2	4	18	
- 보호수외과수술	200	40	50	50	50	140	
- 철새조망시설	1	1	-	-	1	5	
- 핑이용가공시설	10	2	2	2	2	6	
- 산림입지조사	2,619	1,000	1,000	1,050	167	669	
사	계	9,328	3,847	3,098	3,088	2,743	10,972
업	- 보조	5,343	3,181	2,581	2,582	1,998	7,994
비	- 용자	2,468	126	126	126	87	347
	- 지방비	459	486	337	326	621	2,482
	- 자부담	1,058	54	54	54	37	149

5. '99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도, 산림환경연구소, 시·군, 핑이용가공시설을 신·증설코자 하는자

(2) 지원조건

- 산성비모니터링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야생조수실태조사, 서식환경조성, 보호수외과수술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핑이용가공시설 : 용자 70%, 자부담30%

(3) 사업내용

<산성비 모니터링>

- 전국 65개 고정조사구에서 산성비모니터링 및 산림피해 조사평가
- 도산림환경연구소의 산성비 모니터링 장비의 현대화
- 산성비 피해 산림에 대한 피해회복 실연사업 추진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지정 관리>

- 산림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1호에 의한 보호대상식물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천연보호림으로 지정 관리
- 보호수 지정·관리 철저
- 노목·거목·희귀목등 보호가치가 있는 수목을 발굴하여 보호수로 지정관리
- 보호수중 수간이 부패되거나 구멍 등이 생겼을 경우 외과수술 실시

<야생조수 보호관리>

- 전국 810개 고정조사구에서의 야생조수 서식실태조사(매년 405개소씩 격년으로 조사)
- 야생조수 서식환경개선사업 추진
 - 조수보호구 경계표시, 안내판 정비, 서식공간(소구역 공한지) 확보, 먹이 식물 식재등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조수 보호·관리 강화
 - 주요 멸종위기종 서식지에 대한 조수보호구 지정
- 야생조수 불법포획, 밀매행위단속 및 홍보활동 강화
- 펄 이용 가공 및 저장시설 설치

나. '99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계	예산액(보조:일반,용자:농특)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백만원 3,088	2,708	2,582	126	326	54
산성비모니터링	65개소	253	202	202	-	51	-
야생조수서식실태조사	27명	402	201	201	-	201	-
야생조수서식환경조성	2종	72	36	36	-	36	-
보호수외과수술	50본	76	38	38	-	38	-
펄이용가공시설	2개소	180	126	-	126	-	54
산림입지조사	1,050천ha	2,105	2,105	2,105	-	-	-

※ 용자조건 : 연 5%, 3년거치 7년상환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 시·군·구, 지방산림관리청

- 산림청 : 지침시달, 자금배정
- 도 : 사업지도·감독
- 시·군 : 사업대상자선정, 집행 및 사후관리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자원조성국 산림환경과(042-481-4170~7)
- 시·도 : 산림과, 산림관리과, 산림환경과, 녹지과
- 시·군 : 산림과, 녹지과, 공원녹지과, 산림환경과
- 지방산림관리청 : 운영과, 경영팀
- 용 자 : 임업협동조합

다. 대상자 선정

<산성비 모니터링>

- 선정기준 : 보조사업 신청물량을 감안, 시·도별 사업대상자를 심사, 선정
- 우선순위 : 산성비 측정장비 구입은 기본조사장비 구입 우선
- 선정절차

보조사업신청
(시·도)

보조사업선정
(산림청)

<야생조수보호 및 보호수 관리>

- 선정기준
 - 조수보호기본계획을 기준으로 보조사업·신청물량을 감안 시·도별 사업대상자를 심사 선정
- 우선순위
 - 조수보호구의 개소수 및 면적을 많이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치단체
 - 야생조수실태조사 예산의 50%이상을 지방비로 확보하는 자치단체
 - 야생조수실태조사 결과 서식밀도가 높은 자치단체
 - 보호수 지정이 많은 자치단체

○ 선정절차



<평이용가공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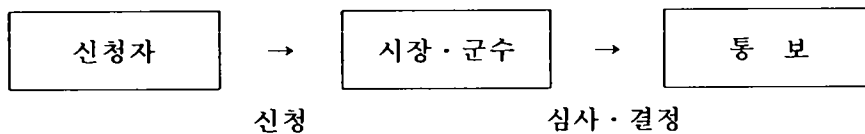
○ 선정기준

- 총 사업비의 30%이상을 자부담으로 투자 가능한 자
- 국내산 평을 이용한 가공시설을 신·증설 또는 가공식품을 제조코자 하는 자

○ 우선순위

- 평사육 경험이 많은 자
- 새로운 평가공식품을 개발 제조코자 하는 자
- 평가공시설을 신·증설코자 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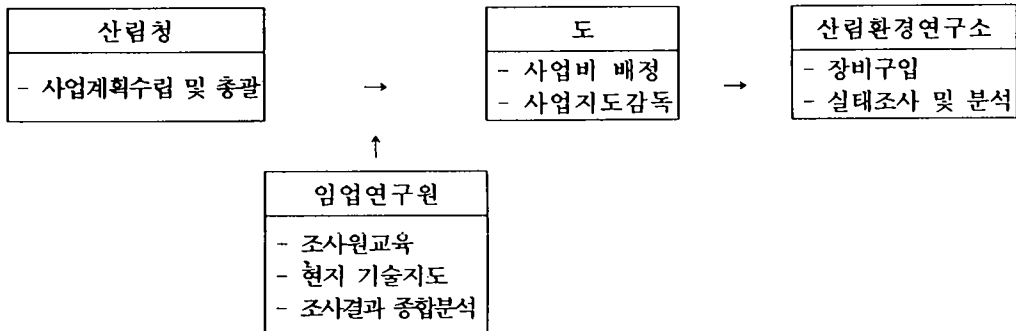
○ 선정절차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산성비모니터링>



<야생조수보호·관리>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3조, 동시행령 제2조에 의거 5년마다 조수보호기본계획 수립(산림청)

- 제3차 조수보호기본계획 : '97~2001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3조, 동시행령 제2조와 조수보호기본계획에 의거 사업계획수립(시·도지사 수립)
- 현지여건을 기초로 상향식 계획을 수립하고 천재지변 또는 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계획 변경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

- 보호대상식물이 집단적 생육지에 대한 조사 및 천연보호림 지정 관리
- 보호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계획수립(외과수술 포함)

<핑이용가공시설>

- 사업신청자는 월별추진 및 가공용 핑의 확보계획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
- 시·군·구는 시·도를 경유하여 예산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산림청에 제출
- 총사업비의 축소가 없고 전체 작업공정의 50%이내 진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계획 변경신청 가능

마. 기타 사항

- 산성비 모니터링은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산림환경연구소와 시·군이 긴밀히 협조 추진
- 야생조수서식 실태조사 및 서식환경조성은 시·군이 임업연구원과 산림환경연구소의 협조로 시행
- 보호수외과수술은 시·군이 사단법인 한국수목연구회 또는 나무병원 등 전문기관의 협조 및 용역으로 시행
- 사업추진에 따라 자금유자
-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목적외에 지원자금을 사용 할 경우 즉시 회수 후 산림청에 보고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구 산림과(녹지과, 공원녹지과, 산림공원과)

나. 신청자격

- 펄 사육자중 펄을 이용한 가공시설을 신·증설하고자 하는 자
- 펄을 이용한 제조시설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

다. 신청절차

- 신청자가 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 전년도 1월 31일까지 신청



라.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1항 관련 별지제3호서식]
- 대출신청 자료 1부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4항관련 별지제4호서식]

마. 기타사항

-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와 함께 매년 1월말까지 시·군에 신청하고 시·군은 시·도를 경유하여 동년 3월말까지 산림청에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제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지계획과(과장 곽주린, 행정사무관 송경원)입니다.

1. 목적

산림 및 휴양자원을 이용한 소득원 개발과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낙후된 산촌을 살기좋은 마을로 개발함으로써 균형있는 국토발전과 산림경영의 활성화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낙후된 산촌 주변의 풍부한 산림(휴양)자원을 활용·개발하고 자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산촌 구분지표에 해당하는 산촌 중심마을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소득원개발 등 생산기반조성과 주거환경을 포함한 생활환경개선을 집중적으로 지원
- 상위 지역개발계획과 연계한 체계적인 개발의 추진
- 유형별 개발모델과 중점투자방향의 설정으로 투자효율성 증진
- 전통문화의 보전과 환경친화적 개발의 병행추진
-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 임업의 산업화 가능성 제시를 통한 정체성있는 개발

나. 장기사업목표

- 2007년까지 240개 마을 개발 예정

3. 근거법령 : 산림법시행령 제22조의 3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6년	'97년	'98년	'99년 (예산안)	2000년	2001-2004	
사업량	4(5)	5(16)	16(22)	22(8)	8(20)	95(79)	
사업비	계	9,667	12,080	8,762	18,383	23,504	159,720
	보조	6,147	6,480	5,029	9,423	12,677	83,560
	융자	2,560	3,200	2,133	5,120	6,187	43,520
	지방비	960	2,400	1,600	3,840	4,640	32,640
비자부담	-	-	-	-	-	-	

※ ()내는 사전설계 사업물량 임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 경

- 공업화 위주의 성장우선주의는 국토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였고 특히 산촌지역은 각종 농촌개발정책에서도 우선순위가 낮아 혜택에서 소외
- 인구의 과소화·노령화로 인한 낮은 생산성으로 임업노동력의 감소와 마을기능의 쇠퇴가 가속화 되는 지역으로 주변산림의 경영관리에도 어려움을 초래
- 자연적·입지적 특성상 주변의 풍부한 산림(또는 휴양)자원을 활용하여 개발할 경우 활력 있는 발전 가능
- 산림자원을 이용한 소득원 개발 등 생산기반조성과 주거환경개선을 포함한 생활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산촌구현
- 산촌과 산촌주민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산림을 경영하게 하는 산림·산지·산촌의 종합개발의 추진

(2) 자금지원대상자 : 산촌지역주민

(3) 지원단가 및 조건

- 마을조성 : 마을당 총사업비 1,400백만원(사업기간 3년)
 - 보 조 : 1,000백만원
 - 보조율 : 국비 70%, 지방비 30%
 - 용 자 : 400백만원
 - 산촌소득원사업 : 금리 6.5%, 거치/상환(3/ 7)
 - 주 택 증· 개 축 : 금리 4.5%, 거치/상환(3/ 7)
 - 주 택 신 축 : 금리 6.5%, 거치/상환(5/15)

(4) 지원시설의 종류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별	세부사업내용	사업비
보조금 (10억)	생산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질 고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 특산임산물 판매장·집하장 등 공동판매·가공이용·저장시설 등 산촌산업개발 ◦ 주민 요망(숙원)사업 등 	500
	생활환경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수도, 마을안길 등 마을기반조성시설 ◦ 오·폐수처리시설, 소각장 등 환경보전시설 ◦ 마을회관, 복지회관 등 문화 복지시설 ◦ 기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토목공사 등 	500
융자금 (4억)	소득원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외의 개별소득사업 - 임간방목, 한봉·양봉, 토종닭 사육등 	100
	주택 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신축(10동 기준) ◦ 주택 증·개축(20동 기준) 	300

※ 사업내용은 마을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5) 사업내용

- 생산기반조성 및 소득원 개발
 - 생산기반 조성 : 농로, 생산단지(재배단지) 등
 - 산촌 산업개발 : 임산물 공동저장, 판매, 가공, 이용시설, 산촌휴양시설 등 소득기반 조성
 - 소득원 개발 : 버섯, 산나물, 고로쇠 수액, 장뇌삼, 특산약용식물, 특용작물등 단기소득 임산물생산,흑염소·토종닭·한봉등 가축사육과 향토음식점 등 산촌에서 용이한 소득사업
- 생활환경개선사업
 - 문화복지시설 : 마을회관(산림문화회관), 복지회관 등
 - 환경보전시설 : 소각장, 오수처리시설, 소하천 정비 등
 - 마을기반정비 : 상·하수도, 마을안길 진입로
 - 주택 개량 : 주택의 신축 및 증·개축
 - 기타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토목공사, 재해방지시설 등
- 마을특성에 따라 타부처 관련사업 연계 지원

나. '99사업비(예산안)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마을)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농특)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22(8)	18,383	14,543	9,423	5,120	3,840	-
마을조성	22	17,920	14,080	8,960	5,120	3,840	-
사전설계	8	463	463	463	-	-	-

※ 융자조건 : 연리 4.5~6.5%, 10~20년 상환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경영국 산지계획과[(042) 481-4215~4216]
- 도 : 농정국 산림과(산지이용과)
- 시·군 : 산림과(녹지과)

다. 자금지원 대상자

- 보조금 : 마을공동시설 등 지원
- 융자금 : 개발대상 산촌주민중에서 소득원사업을 희망하는 자,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자

라. 사업시행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가) 기본계획 수립

- 시장·군수가 직접 수립하거나 농산촌개발이나 산림개발 사업 등에 경험이 있는 임업협동조합, 농어촌진흥공사 등 전문기관에 의뢰

- 사업대상지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개발수요등 주민의견 수렴
 - 산림경영의 활성화를 지향하는 명확한 개발목표와 방향설정
 - 중장기개발계획등 기존계획과 관련 상하위 법규를 검토
 - 타부처 및 우리청 소관 예산사업 중 연계사업 유치 계획검토
 - 산촌산업기반시설인 공동판매, 가공, 이용시설 또는 대규모 시설 설치 시 시장규모와 시설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 타당성 검토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서(안)에 대해 전문교수 자문, 지역주민 설명회(공청회) 등을 통해 타당성 등을 검토
- 기본계획 확정전 기본계획(안)과 설명회(공청회) 결과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사전보고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 확정하고 도지사에게 승인을 건의. 도지사는 기본계획 승인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

(나) 기본계획의 변경

- 개발계획의 변경은 계획수립절차와 동일
- 다만 다음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변경, 도지사에게 결과 보고
 - 다른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변경
 - 지형사정으로 인한 근소한 위치 변경,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변경등

(2) 기본계획의 내용

- 개발의 목표와 기본방향
- 지역현황 : 현행지표와 목표년도 개발지표제시
- 부문별 개발계획 : 생활환경정비계획, 생산기반조성계획
- 도입시설의 타당성 조사(경제성 분석)와 연차별 투자계획
-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계획
 - 사업관리 계획 및 감리계획
 - 사후관리 방법 및 주체(기구)
 - 후속사업 등
- 기본계획에는 기본계획 수립참여자 명기

(3) 기본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기본계획은 도 발전계획, 시·군 발전계획 다른 부문의 개발계획과 조화되게 수립
- 법적 제약 등으로 시행 불가능한 사업 또는 투자가 과도한 대형사업 등으로 인한 과대사업비가 나오지 않도록 유의
- 주민 개개인의 이기적인 개발수요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대화, 협의 조정하여 지역주민의 과잉기대 사전방지
- 공동판매, 가공, 이용 시설 등은 유사시설의 분포상태, 수요전망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계획 수립
- 철저한 현지조사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
- 개발마을과 주변마을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계획수립
- 주택개량,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등 타부처소관 연관사업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서등 해당부처의 단위사업과 같은 지원기준 적용
- 토지매입비(마을공동회관 부지등)는 국고보조금으로의 집행을 지양하고 지방비 또는 자부담 확보 추진

(4) 실시설계

-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장·군수가 직접 설계하거나 농어촌개발, 산림, 산촌개발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수립
- 실시설계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의 목표, 기본방향
 - 생산기반조성 및 생활환경개선계획
 - 연도별 도입시설계획
- 환경친화적이며 산촌이미지에 맞는 경관 조성이 가능하도록 소재와 공법을 선택하고 경관의 사전 사후를 비교하여 계획 수립
- 실시설계는 시장·군수가 검수(인수)함으로써 확정
 - 부문별로 관계 기술직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심사

(5) 사업시행

- 시장·군수가 직접시행하거나 농어촌개발 또는 산림개발사업에 경험이 많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업시행
- 기본계획에 의해 당해년도 투자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등에 따라 계획적으로 추진
- 사업시행자는 국토이용계획 도/시·군 발전계획, 타부처개발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절차를 행하고 사업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6) 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민간전문업체에 위탁(관계공무원을 공사관리책임자로 지정운영) 하여 시행

(7) 사업비 지원방법

- 마을단위로 정액지원을 원칙
 - 지원규모를 초과하는 사업은 별도재원(지방비, 자부담 또는 타부처소관 투융자)을 마련하여 추진
-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도비 또는 시·군비) 30%는 반드시 확보하여 해당사업에 투자
- 읍자사업은 “농특회계 읍자치침”에 의거 시행

(8) 기타사항

- 농어촌생활환경정비구역 지정
 - 산촌개발사업지를 농어촌정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여건 조성
 - 다른 법률의 의제, 배제로 제한사항 해소 및 부담금 면제
- 예산신청
 -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의거 예산이 신청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예산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 기타 행정자치부, 환경부사업등도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협조하여 예산신청

-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사업계획수립과 실행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대표, 관계전문가, 임업관련단체장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가칭 『산촌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
 - 도, 시·군에서는 농림·내무·건설·산림과장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부서간 협조체제 구축
- 자문교수 위촉
 - 지역대학교수를 분야별(산림, 지역계획, 건축·주택, 농가소득등) 자문교수로 위촉하여 현지조사·설계 등에 자문
- 현장보존 관리
 - 시장·군수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전후의 현장사진 등을 촬영·보관 및 제출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대상 :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나 그 종물
- 사후관리 기간 : 보조금의 교부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 사후관리 기준
 - 사후관리 대상 재산에 대하여는 처분을 제한하며 장부를 비치하여 그 수량의 증감과 현재액을 기록
 -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 불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 2항 및 제35조, 시행령 제15조)

나. 보고

- 사업비 정산 보고 : 사업종결후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청에서 정산액 확정통보가 있으면 도 자체 농특회계 세입징수관에게 잔액 반환조치하고 영수증 첨부 결과 통보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1) 선정기준

- 산촌구분지표에 해당하는 498개 읍·면 행정구역내에 소재하는 마을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마을
 - 평균소득이 군의 평균 농촌소득보다 낮은 지역으로 생산기반 및 생활환경정비가 시급한 지역
 - 주변 산촌마을의 중심지로 기능이 가능한 30~50호정도의 자연부락 중 집단마을
 - 타 계획에 의해 개발이 예정되었거나, 지가가 높고 수년내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제외
- 산촌개발 후 정주민구의 증가가 예상되고 산림과 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지역
- 산촌개발에 대한 주민의 참여도가 높으며, 마을에 개발주체(사람)가 있고, 개발능력이 있는 지역

(2) 우선순위

- 뚜렷한 산림소득원이 있어 임업적 잠재력이 크고, 개발후 임업경영의 활성화가 예상되는 지역
 - 자연휴양림과 연계되는 지역
 - 산촌으로서 정체성 유지가 가능한 지역
 - 특산물이 있거나 특화사업의 개발이 유리한 지역
- 상위계획과의 관련하에 계획수립이 가능한 지역
 - 도 또는 시·군 자체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농림부, 행정자치부 등 타부처 소관사업의 연계투자가 용이하여 종합적인 개발이 가능하고 사업의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
- 협업체나 영림단이 조직되어 있는 지역
- 개발주체의 참여도와 의욕이 높은 지역

(3) 선정절차

○ 대상마을 신청

- 주민의견 수렴
- 대상지 현황조사서(서식2 참조)
- 개발복안서
 - 개발효과 분석
 -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 산림경영의 활성화 방안
- 시장·군수 → 도지사 → 산림청장에게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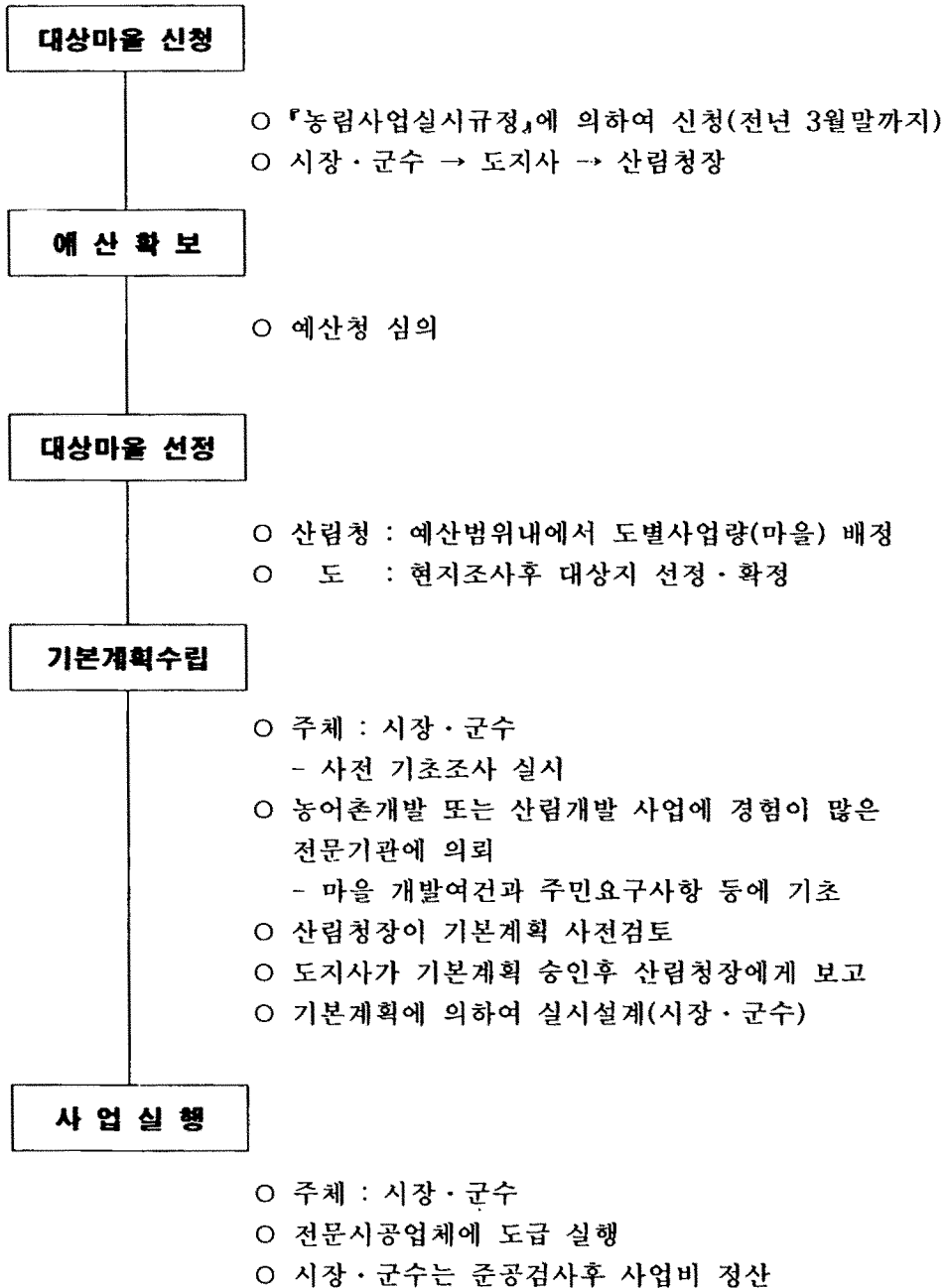
○ 대상마을 선정

- 현지조사시에는 지역 산촌전문가(임학, 또는 지역개발교수 등)가 참여하여야 하며 조사후 의견서 첨부 도지사에게 보고
- 도지사는 대상지 현황조사서, 개발복안서, 현지조사의견서를 검토하여 개발여건과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조건이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

○ 대상마을 선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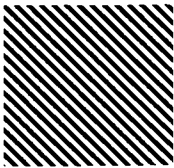
- 지침시달 → 현지조사 및 대상지 선정 → 대상지확정 → 보 고
- (산림청) (시·군) (도) (도→산림청)

(4) 사업추진 절차



여 백

V. 산 림 자 원 조 성



여 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국제협력과(과장 전진표, 담당자 류정기)입니다

1. 목 적

장기·안정적인 목재공급원 확보로 국내 목재산업보호·육성

2. 추진방향

- 2050년까지 100만ha의 해외조림지 조성 목표
- 해외조림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
- 투자유망국가와 교류협력 강화

3. 근거법령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의 신고)
- 산림법시행규칙 제105조의3(기금의 용도)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92-'96년	'97년	'98년	'99년 (예산안)	2000년	2001-2004	
사업량(ha)	13,051	9,576	9,500	11,000	24,400	97,600	
사 업 비	계	10,510	8,307	12,569	10,111	21,960	87,840
	보 조	-	-	-	-	-	-
	용 자	5,020	5,786	8,190	9,100	15,372	61,488
	지방비	-	-	-	-	-	-
	자부담	5,490	2,521	4,379	1,011	6,588	26,352

5. '99년도 사업실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지원대상 : 해외조립을 위한 해외자원개발사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로서 용자 신청자
- 지원규모 및 조건
 - 재 원 : 임업진흥기금
 - 지원비율 : 사업비의 90%이내
 - 지원내용 : 해외조립에 필요한 사업비
 - 용자조건

사업별	금리	용자기간(년)				용자한도	용자비율
		구분	계	거치	상환		
해외조립	연3%	속성수	10(동남아) 15(대양주,남미)	7 10	3 5	없 음	조립사업비의 90%이내
		장기수	25	15	10		

나. '99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임업진흥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해외조립	ha 11,000	10,111	9,100	-	9,100	-	1,011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산림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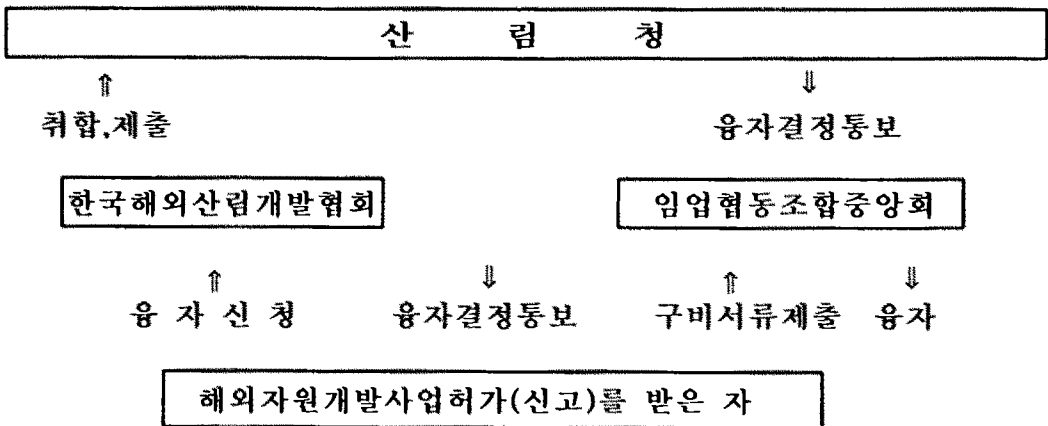
- 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지원 결정 : 산림청 국제협력과
- 융자금 대출 및 사후관리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사업담당 부서

- 산림청 국제협력과(042-481-4148)
 - 해외조림등 해외산림개발실적,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당해년도 사업계획서 등을 감안하여 융자금액 결정
- 한국해외산림개발협회(02-733-3453)
 - 업체별 융자신청서를 취합, 산림청에 제출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금융부 (02-416-9421)
 - 융자금 대출 및 사후관리

다.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해외자원개발사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로서 조림대상국가의 공공기관 또는 우리나라 공관에서 당해년도 사업을 확인받은 자
- 우선순위 : 없음
- 선정절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산림청 : 해외조림실적 확인
임업협동조합중앙회 : 대출금 사후관리

나. 보고

- 사업추진실적 보고(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9조)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한국해외산림개발협회

나. 신청자격

(1) 선정기준

- 해외자원개발사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로서 당해년도 조림대상 국가의 공공기관 또는 우리나라 공관에서 당해년도 사업을 확인받은 자

(2) 우선순위 : 없음

다. 신청절차

- 선정권자 : 산림청장
- 선정절차 : 해외조림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신청 → 심사 → 융자금 결정 → 민원인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통보
※ 사업계획 심사 : 조림예정지 정리, 양묘, 식재, 사후관리 등 작업단계별 타당성 및 적정비용을 검토

라. 구비서류

- 해외조림사업 융자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 2000년도 사업계획 확인서 1부(조림대상국가의 공공기관 또는 우리나라 공관 확인)
- 소요자금 산출내역서 1부(산출관련 증빙서류 첨부)
※ 서식 : 붙임

마. 기타 참고사항 : 임업진흥기금 융자지침 참조

해외조림사업 용자신청서

신청자	상호(법인명)						
	성명 (대표자명)		주민등록 번호		전화		
	주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량(ha)			
	사업소재지		국가		단비(\$/ha)		
			지역		조림수종		
	사업비		정부지원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계	보조		
			천\$				
천원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당해년도 사업계획 1부 (진출국주재 아국 공관이나 진출국의 공공기관 확인) 2. 소요자금 산출내역서(별첨1 서식)							

<별첨 1>

소요자금 산출내역서

1. 사업개요

수 종	면 적	본 수	총조립비	사업기간	비 고
	ha	본	US\$		

2. 사업비 산출내역(ha당 사업단비)

세부사업별	사 업 비			산 출 내 역	비 고
	현지통화	US\$	원화(천원)		
계					
(1) 예정지정리 - 인건비 - 장비사용료					장비사용시 구체적으로 명시
(2) 식 재 - 인건비 - 기 타					장비사용시 장비사용료 계상
(3) 조립지관리 - 인건비 · 풀베기 · 기 타					
(4) 자재대 - 묘 목 - 기 타					
(5) 기타비용					구체적으로 명시

* 적용환율 : US\$ = 원

3.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자원조성과(과장 조연환, 임업사무관 심영만)입니다.

1. 목 적

- 경제적으로 가치있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을 조성
- 목재의 안정적인 자급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지역, 산지특성에 맞는 생태적 조림으로 산림자원 조성
- 생육단계별 육림사업의 적기시업과 사업량 확대로 경제림화 촉진
- 생산임지를 중심으로 지역 또는 권역별로 집중투자 및 기술지도
- 우량한 묘목을 책임 생산하여 조림성과 거양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109조(자금지원)
- 산림법시행령 제108조의2(자금지원)
 - 임업기술지도, 조림 및 육림의 장려
 - 종묘·종균의 생산 및 개발과 채종림·천연보호림·시험림 및 조수보호 등 지정 산림의 관리
 - 특수개발지역의 개발
 - 영림계획의 작성·변경, 시업 및 시업의 대집행
 - 임도시설의 조성(보수를 포함한다)
 - 산불예방시설 및 진화장비의 확보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6년	'97년	'98년	'99년 (예산안)	2000년	2001 ~2004	
합 계	사업량(ha) (백만본)	990,827 (228)	231,380 (60)	203,037 (46)	153,288 (37)	278,550 (47)	1,116,000 (188)	
	사업비	계	616,848	165,343	153,950	128,047	183,564	733,256
		보 조	210,405	71,409	69,004	58,912	80,722	322,388
		용 자	59,874	14,906	11,879	10,880	17,250	68,900
		지방비 자부담	169,284 177,285	51,766 27,262	48,991 24,076	40,013 18,242	61,784 23,808	246,736 95,232
조 립	사업량(ha)	124,700	16,200	15,580	14,588	18,500	74,000	
	사업비	계	236,795	52,670	55,682	56,704	63,164	252,656
		보 조	107,162	32,896	34,990	34,995	36,022	144,088
		용 자	10,301	2,733	2,070	2,081	3,450	13,800
		지방비 자부담	71,268 48,064	13,253 3,788	14,977 3,645	16,096 3,532	17,084 6,608	68,336 26,432
육 립	사업량(ha)	866,127	215,180	187,457	138,700	260,000	1,042,000	
	사업비	계	330,595	102,130	89,708	64,466	111,700	445,800
		보 조	103,243	38,513	34,014	23,917	44,700	178,300
		용 자	19,898	5,847	4,673	4,673	8,600	34,300
		지방비 자부담	98,016 109,438	38,513 19,257	34,014 17,007	23,917 11,959	44,700 13,700	178,400 54,800
묘목 생산	사업량(백만본)	228	60	46	37	47	188	
	사업비	계	49,458	10,543	8,560	6,877	8,700	34,800
		보 조	-	-	-	-	-	-
		용 자	29,675	6,326	5,136	4,126	5,200	20,800
		지방비 자부담	- 19,783	- 4,217	- 3,424	- 2,751	- 3,500	- 14,000

5. '99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 경

- 장기조림계획에 소요되는 묘목을 효율적으로 생산하여 경제적이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림관리를 통하여 우량용재 생산 기반조성

(2) 지원대상자

- 보조사업 : 조림, 육림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산주
- 용자사업 : 조림, 육림사업 및 묘목생산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신청자
(산주, 정부계획 조림용 묘목생산자)

(3) 지원비율

○ 조 림

- 정부보조

- 경제수조림 : 사업비의 90~100%
- 큰나무조림 : " 100%

- 용자

- 자력사업 : 소요 사업비의 100%까지 용자
- 보조사업 : 산주자부담액의 100%까지 용자

○ 육 림

- 정부보조 : 사업비의 80%

- 용 자

- 자력사업 : 소요사업비의 100%까지 용자
- 보조사업 : 산주자부담액의 100%까지 용자

- 묘목생산 : 묘목생산비의 60%(용자)

나. '99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예산액(보조일반·농특,용자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계	153,288ha 37백만본	128,047	69,792	58,912	10,880	40,013	18,242
조 립	14,588ha	56,704	37,076	34,995	2,081	16,096	3,532
육 립	138,700ha	64,466	28,590	23,917	4,673	23,917	11,959
묘목생산	37백만본	6,877	4,126	-	4,126	-	2,751

※ 용자조건 : 경제수 조립 및 육림 연리 3%, 20년거치후 15년 상환
 기타 조립 및 육림 연리 3%, 10년거치후 5년 상환
 묘목생산 연리 6.5%, 3년거치후 2년 상환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조립·육림 : 시·군
- 묘목 생산 : 시·도(임업협동조합 : 용자금 취급업무)

나. 사업담당부서

- 산 립 청 : 자원조성국 자원조성과(042-481-4154~9)
- 시 · 도 : 산림(녹지)과등 산림부서
- 시군자치구 : 산림(녹지)과등 산림부서

다. 사업시행

<조림>

- 조림예정지 선정 : 미림목지(나무가 없는산림), 산불 및 병해충 피해지 수종갱신 대상지 등 위주로 선정
- 조림예정지 정리
 - 불량림은 완전정리하되 우량목은 존치
 - 제거된 지장물은 조림에 지장이 없도록 종·횡으로 줄을 맞추어 정리
- 수종선정 : 적지적수, 산주희망수종, 향토수종, 소득수종 위주로 선정
- 조림
 - 수하식재, 혼효조림 등에 의한 생태적 조림 실시
 - 식재본수는 수종 임지여건, 목적 등에 따라 수급계획량 내에서 조정실행
 - 경제수 : 2,000~5,000본/ha
 - 큰나무 : 1,500본/ha(1,000~2,000본/ha)
 - 지역녹화사업 : 400본/ha(300~500본/ha)
- 묘목 비료 수급 : 조림설계에 따라 수급
- 식재작업 : 식재열(줄)에 구애받지 말고 적정 식재거리를 유지하여 최대한 용이하고 능률적으로 실행

<육 림>

- 풀베기 : 조림후 3~5년간 6~8월사이에 년 1~2회 실행
- 어린나무가꾸기 : 조림후 5~10년된 임지에 6~9월사이에 실행하되 조림목 및 우량목 성장에 지장을 주는 잡관목, 피해목등을 제거
- 덩굴제거 : 임목에 피해를 주는 덩굴류를 2~11월 사이에 약제(근사미, 디카바) 주입 등으로 제거
- 천연림 보육
 - 예정지 선정이 용이한 1~2월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미래목에 대한 가지치기와 방해목을 제거
 - 어린나무보육대상지 : 상층임목간의 우열이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는 천연임분
 - 유령림보육대상지 : 평균수고 4~12m정도로서 상층임목간의 우열이 현저하고 울폐되어 수관경쟁이 심한 임분
- 간 벌 : 임목상호간에 경쟁을 하고 있는 밀생임분으로서 수관이 상호 중첩되어 밀도조절이 필요한 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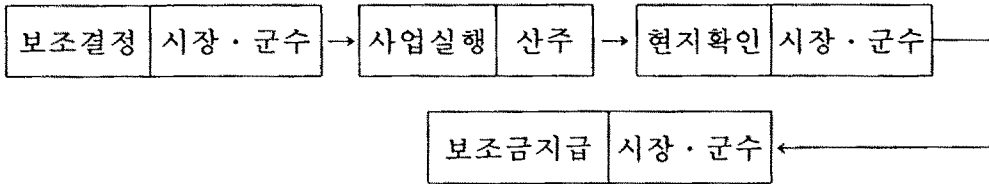
<묘목생산>

- 산림법 제45조에 의거 등록을 한 종묘판매업자중 정부 조림계획 조림용으로 필요한 묘목을 도지사로부터 생산 지정받은 수량에 대한 책임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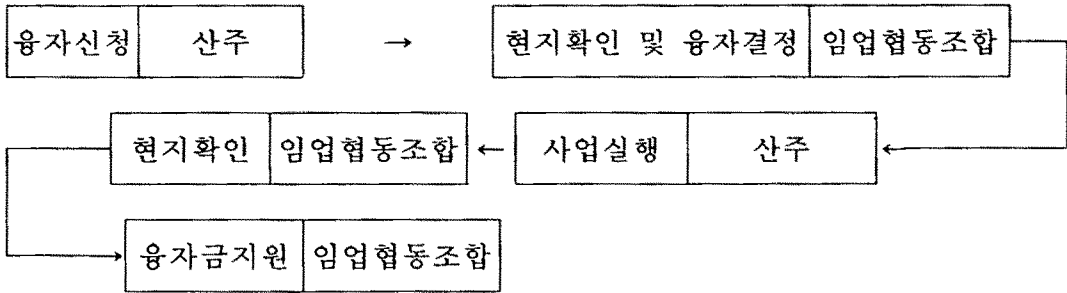
라. 사업비 지원방법

<조림 및 육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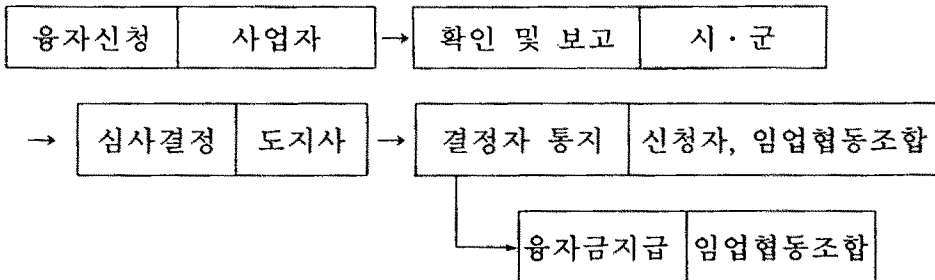
○ 보조사업



○ 육자사업



<묘목생산>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1) 주체

- 조림 및 육림 : 산림소유자, 시·군(시·도) 및 산림청
- 묘목생산 : 묘목생산자, 시·군(시·도) 및 산림청

(2) 사후관리 방법

- 조림목에 대한 활착조사 : 활착상황, 생육상황, 사후관리상황
- 조림 및 육림사업 실행상황을 사후관리 대장에 기록 유지
- 현지도점검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강구
- 양묘 포지 육묘관리와 양묘사업상황, 생산실태조사(년2회) 실시

나. 보고 기타

<조림 및 육림>

- 조림실적보고 : 춘기조림 완료후(일반통계승인번호 13611)
- 조림·활착상황 보고 : 8. 31 (일반통계승인번호 13612)

<묘목생산>

- 양묘사업 실태점검 조사결과 : 매년 5월말, 10월말까지
(일반통계승인번호 13609)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조림 및 육림>

- 보조사업 : 시·군 산림(녹지)과
- 융자사업 : 시·군 임업협동조합

<묘목생산>

- 융자사업 : 시·군

나. 신청자격

<조림 및 육림>

- 보조사업 : 보조사업을 희망하는 산주 또는 산림경영자
- 융자사업
 - 영림계획상 계획이 책정된 산림소유자, 시업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
자력으로 사업을 희망하는 자

<묘목생산>

- 시·도지사에게 종묘판매업 등록을 한 자중 정부지정 묘목생산자

다. 신청절차

<조림 및 육림>

- 보조사업 : 보조사업 희망 산주가 임야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청
- 용자사업 : 사업 희망자가 시·군 임업협동조합장에게 신청

<묘목생산>

- 용자사업 : 정부지정 묘목생산자가 시·군 경유 시·도지사에게 신청

라. 구비서류

- 보조사업 : 사업신청서(별지 1호 서식)
- 용자사업 : 임업진흥자금 용자신청서(별지 2호 서식)

마. 대상지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조 림>

- ① 미입목지
- ② 산불·병해충등 피해임지
- ③ 수확벌채지
- ④ 복층림 조성을 위하여 벌채된 임지
- ⑤ 불량한 수종갱신 대상지
- ⑥ 기타 조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육 림>

- ① 영림계획상 육림계획이 책정된 산림소유자
- ② 육림사업 시업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

<국고보조 제외임지>

- ① 국유림
- ② 국유림중 대부(사용허가), 분수림
- ③ 준보전임지중 타용도로 전용 할 임지

<묘목생산>

- ① 정부지정묘목 생산자중 시·군 농어촌발전계획 수립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반영된 자
- ② 전년도 예산부족 등으로 탈락된 적격자

사 업 신 청 서

1. 사업명 : 조림·육림사업(보조사업)

2. 현 황

사업예정지 현 황	위 치	군. 면. 리. 번지
	소유자명	
	면 적	필지 ha (m ²)
	영림계획 편성내용	
기타 특이사항		

3. 세부사업계획

구 분	세부 사업명	계획 면적	단비	사 업 비 (천원)				
				계	국고	읍자	지방비	자부담
산림소유자		(ha)						
산림경영자								
단체 또는 회 사								

임업진흥기금·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융자신청서

사업명	세부사업명	단위	사업량	총사업비(천원)				사업소재지
				계	융자	자담	보조	

199

○ 신청인 주소
 상호(법인명) 전 화
 성명(대표자) 인 주민등록번호

○ 첨부서류
 가. 소유권 확인서 1부.
 나. 차주 및 보증인 인감증명서(자금대출시) 각 1부.

○○ 임업협동조합장 귀하